

## <발제 2>

#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및 개선 방향

■ 발제자: 이상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1. 논의 방향

사회보호법에는 중요한 2가지 보안처분이 있는데, 하나가 보호감호처분이고, 다른 하나가 치료감호처분이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또는 약물중독자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고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전통적인 형벌을 과할 수 없거나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치료감호는, 책임무능력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도의적 책임론을 전제로,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서 고안된 것이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등이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범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정신의료 행정상의 정신장애자나 마약중독자 등을 단기간 수용하는 행정처분과 다르다.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를 일반 사회의 정신의료체계에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보안처분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할 것인지는 해당 사회의 정신의료체계 및 행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치료감호 존재 자체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장애자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안처분은 치료의 이름 아래 정신장애자를 사회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대책이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 내지는 특별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경우 보안처분에 의한 보안적 관점에서의 신병의 구금은 결정적으로 정신장애자의 치료와 모순된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제재로서의 보안처분 틀 안에 있는 치료감호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우리나라의 정신의료체계나 정신의료행정상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자 등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전적으로 기존의 정신의료체계에 일임할 수 없다고 보고, 보안처분으로서의 치료감호의 존재를 전제로 논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치료감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동안 논의된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논의의 전제

가.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하여는, 우선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그에 대한 한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나.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심신장애자는 책임원칙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되지 않거나 형이 감경된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이들을 일정기간 강제로 치료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사회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보안처분의 주된 내용은 일정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는 보안(격리)과 치료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사회적 위험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자를 일정시설에 수용하고 치료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지만, 현행 법치국가 하에서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의 존엄성과 인권이 무참히 박탈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치료감호의 주목적은 정신장애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치료감호의 주된 내용은 치료이므로, 보안의 측면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하되,

치료와 수용질서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시행된 치료감호제도는 치료보다 보안에 우선권을 두고, 피치료감호자의 인권이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무시되어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격리가 배제된 다양한 형태의 치료처분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 한편, 치료감호는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치료감호도 형사제재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보안처분법정주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당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적법절차의 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위자의 범행, 예기되는 범행의 의미와 그 발생위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정도로 제한하여 한다(비례성의 원칙).

## 3. 현행 치료감호 제도에 대하여

### 가. 치료감호 대상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심신상실자로서 벌할 수 없거나(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미약자로서 형이 감경되는 자(형법 제10조 제2항)가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 섭취, 흡입,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치료감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사회보호법 제8조).

사회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 섭취, 흡입, 중독된 자의 경우, 형법 제10조의 규정과 무관하게 치료감호가 선고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는 책임원칙에 의하여 완전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도적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약물중독자에 대해서만 달리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약물중독자의 경우에도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형이 감면되는 경우에 치료감호가 선고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치료 감호 내용

(1)검사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치료 감호청구를 한다.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을 때,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보호감호만 청구할 수 있다.

(2)법원은, 치료감호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3)현행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4)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이다(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회보호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여부를,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6월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한편, 사회보호위원회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선고를 받은 자 또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나 치료감호만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개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 4. 제도적 개선에 대한 고찰

##### 가. 치료감호의 요건

현행 법률에서 치료감호의 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법상 최고형이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도박, 파실상해 등 8개 범죄를 제외하고 모두 치료감호가 선고될 수 있다.<sup>1)</sup>

그러나 치료감호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므로, 비례성의 원칙(비례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항에서 검토)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비례원칙에 의하여 치료감호를 제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실행 범죄행위를 일정한 종류로 한정하듯(제6조), 치료감호의 요건으로 행위 범죄를 일정 법정형 이상의 죄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독일 형법<sup>2)</sup>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중대한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나.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치료의 필요성

현행 법률에서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현행 치료감호가 사회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호만을 중심으로 하여 심신 장애자의 인권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치료 감호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1) 이는 사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감호 요건으로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과 구별된다.  
2) 독일형법 제62조(정신병원감호)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행위자와 그 위법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의 상태에 비추어 중대한 위법행위가 예견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병원감호처분을 명한다.  
독일형법 제64조(금단치료소감호)①알코올 음료 또는 기타 각성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는 습벽이 있고, 그 중독상태에서 범하였거나 그러한 습벽에 기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거나 또는 그 책임무능력이 입증되거나 책임무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러한 습벽으로 인하여 행위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금단치료소감호처분을 명한다.  
②금단치료소감호처분이 처음부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치료감호의 경우 장기간 피감호자를 격리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한데,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란 행위자의 심신 장애로 인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다시 범한 개연성을 의미하는바, 피감호자의 심신 장애 여부 및 그로 인한 위법행위의 개연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판단하기 전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신감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감정하도록 해야 한다.

라.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감호의 독립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2.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이 규정에 의할 경우 책임무능력자가 한정책임능력자나 책임능력자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를 공공의 안정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처우의 균형성을 생각할 때 위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감호 영장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13조 제4항에서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4조<sup>3)</sup>, 제96조<sup>4)</sup>, 제208조<sup>5)</sup>, 제214조의 2<sup>6)</sup>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4) 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5)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와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 6) 제214조의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감호영장의 발부요건이 일반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과 동일하고, 보안처분 역시 큰 틀에서는 형사 제재의 하나이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구속 문제도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된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호법 제13조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감호 기간

현행 사회보호법에 의하면,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 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이다(법 제9조 제2항).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5·12·29]

②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5·12·29]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결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12·29]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⑥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⑦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⑧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⑩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제3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⑫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 2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0·12·18]

치료감호처분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적 요소 중의 하나가 치료기간의 부정기이다.

부정기의 치료감호기간이 사회적 위험원의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치료감호처분은 일반 정신병동에의 입원에 비하여 중대한 신체상·의사 결정상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부정기의 치료감호기간으로 평생 감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심신장애의 원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전문가가 판단할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정신병동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주 예외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법원에 의하여 판단된 경우에만 가능한 최단기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가중료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2항에서 사회보호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 개시 후 매6월 종료 또는 가중료 여부를,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6월 종료여부를 심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2항에서 사회보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호위원회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의사의 자격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치료감호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사회보호위원회에 의한 가중료 결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현행 치료감호는 부정기이기 때문에, 피치료감호자의 인신이 전적으로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고,

둘째, 사회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소의 조직논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바, 종료 또는 가중료 결정이 치료적 관점이 아닌 치료감호소의 입장과 연결도 리 우려가 있으며,

셋째,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신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 9명 중 2명만이, 정신과 의사가 아닌 그냥 의사로 되어 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중료가 피치료감호자의 인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정을 사법부에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칭 치료처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료 또는 가중료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가 치료처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종료 또는 가중료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아. 잔형기의 처리에 관한 문제

현행 사회보호법은 대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사회보호법 제23조 제2항에서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한정책임능력자에게 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잔형기에 대하여 형의 집행만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와 형을 병과하는 경우, 치료감호기간을 형기에 산입하고 그 잔형기를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위 사회보호법 제23조 제2항은 집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에서 쌓아올린 재사회화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잔형기를 유예하거나 가석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치료감호처분 집행 후 그 집행에 의한 개선효과를 형벌집행, 즉 잔형의 집행으로 파괴시키지 않기 위하여는 잔형의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 비례성의 원칙 규정

치료감호처분은 과거의 범죄행위와 장래의 행위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치료감호가 범치국가내에서 정당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행 사회보호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비례성의 원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적 구성원리로 인정하고 있는 범치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보안처분을 정당화시키고 한계지우는 지도원리이므로, 명문화가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독일 형법 제62조에서 보안처분은 행위자에 의하여 행해졌거나 예기되는 범행의

의미와 그에게서 발생하는 위험의 정도와 비례되지 아니하는 한 선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차. 준용 규정

(1) 제42조에서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치료감호는 형의 집행이 아니고 치료가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포괄적인 행형법 준용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 훈령 등에서, 위 행형법 준용 규정에 의하여, 피치료감호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의하면, 피감호자의 면회에 병동근무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서신수발을 간호사가 검열하며, 전화 역시 친족·친지에 한하여 병동직원의 입회하에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감호자의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첫째, 면회와 관련하여,

소장은 피감호자의 치료 및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친족 및 친지와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중환자를 면회하는 경우, 2. 치료목적 및 수용관리상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면회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면회제한사유로 특별보호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면회시 부정행위를 한 자,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치료감호가 치료 위주라기 보다 보안에 상당 부분 그 내용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둘째, 서신수발과 관련해서는,

친족 및 친지 이외에는, 담당의사가 피감호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 서신수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간호사가 편지를 검열하며 그 내용이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사하는 내용, 치료감호소 시설 및 보안에 위해한 내용, 기타 치료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경우 교부를 불허하며, 불허한 서신은 폐기 또는 치료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신수발에 관한 규정 역시, 지나치게 피감호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 셋째,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모두에게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동생활 태도가 모범적이고 증상이 양호하거나 치료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족 등에게 전화통화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넷째, 두발도 앞머리 10센티미터, 옆머리 3센티미터(여자 제외)로 조발하도록 하고 있다.

#### 다섯째, 신문·도서 열람과 관련하여

일반 수형자와 피감호자에게도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문내용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기사로 피감호자가 정서적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 구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역시 피감호자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여섯째, 위 규정은 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질서 안정을 위하여 규율을 위반하는 피감호자에 대하여 특별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장은 수용질서 안정을 위해 규율을 위반하는 피감호자에 대하여 특별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조치의 대상 행위는 1. 살인, 방화, 폭동, 계획적인 시설물 파괴, 도주, 집단폭행, 식수오염 등 중대한 범법행위자 등, 2. 자해, 싸움, 폭행, 상해, 상습적인 공갈, 협박자 등, 3. 직원에 대한 폭행, 반항, 욕설자 등이다. 위 1.호는 특별보호조치위원회(의료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반정신과장, 사회정신과장, 특수치료과장, 감정과장, 신경과장, 간호과장, 감호과장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의 의결에 의하되, 위 2, 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병동회의를 통하여 담당의사의 치료적 판단에 따라 72시간 이내에서 특별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특별보호조치를 심의 의결할 때에는 보호조치요구자, 관련직원 및 보호조치대상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위원장은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대상자의 의견 진술없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보호조치는, 각 병동에 있는 보호실에 보호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보호조치기간 중에는 피감호자 등의 처우관리준칙 및 피감호자 환경요법(피감호자 권익체계)에 규정된 처우관련 사항 일부를 규제 또는 박탈할 수 있다. 소장은 특별보호조치기간 중 합병증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독하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특별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특별보호조치를 일시 정지 또는 유예할 수 있고, 특별보호조치 중에 있는 자가 반성의 빛이 뚜렷하여 특별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보호조치자의 담당의사는 행동관찰, 면담 등을 통하여 동태를 면밀히 파악, 진료부에 기록하고 이를 치료에 활용하여야 한다. 담당의사는 특별보호조치 기간 중에 있는 피감호자의 건강상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다른 방법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별보호조치자에 대하여는 동태파악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①특별보호조치가 치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 질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보호실에 수감하고 처우를 규제 또는 박탈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특별보호조치는 훈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②특별보호조치 처분을 하는 사람이 소장인지, 아니면 담당의사인지 명백하지 않다.

③특별보호조치의 요건을 보면,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반항, 욕설 행위가 수용질서 안정을 위하여 특별보호조치가 발하여져야 할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④특별보호조치 처분을 통해 어떠한 처우가 규제 또는 박탈되는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상한기간이 없어 남용의 우려가 있다.

⑤특별보호조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데, 남용을 막고 처분권한의 견제를 위하여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한편 의료법(특히 진단서 등 교부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18조 등), 정신보건법 중 치료감호에 필요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다.

카. 현재 치료감호소의 경우 심신장애자와 약물중독자가 사실상 혼거함으로 인해, 심신장애자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 일반 정신병동 이상으로 공간상의 격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신장애자와 약물중독자와의 완벽한 격리수용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5. 맺음말(논의의 시작을 기대하며)

사회보호법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치료감호의 내용을 담을 때 피감호자의 인권이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 없이 사회방위라는 명분 아래 제도의 도입만을 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치료감호 자체에서 안고 있는 반인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동안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에 가려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신의료체계의 미비함 때문

에, 치료감호에 대하여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더불어, 사회방위보다는 치료를 받을 권리를 기반으로 한 치료감호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치료감호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치료처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연구자료의 부족과 게으름 탓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과연 다양한 방식의 치료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치료감호 이외의 치료처분이 필요한 경우란, 사회적 위험성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를 의미할텐데, 그 경우까지 형사제재 틀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정토론 1>

## 치료감호제도의 현황을 중심으로

■ 조성남 국립북극병원 원장

###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의견

치료감호제도는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이미 시행하여 오고있는 제도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실행 방법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어 효과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처벌보다는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McNaughten Rule은 너무 이성에 치중하는 단점이 있었으며 Irresistible Impulse Test는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단점이 있어왔다. 이후에 Durham Rule이 나와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결함의 소산일때에는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Model Penal Code를 통해 보완이 되었다. NGRI(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는 헝클리 사건으로 인해 GBMI(Guilty But Mentally Ill)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죄는 있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준다는 정책이다. 앞으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범망을 빠져나가려는 부작용을 막고 치료적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지은 범죄의 형량 이상으로 치료를 하거나 죄에 비해 너무 빠른 퇴원 등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신감정

#### 1. 정신감정인의 자격

치료감호는 정신감정에 의해 좌우되므로 무엇보다도 공정한 정신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도 정신감정을 이용해 범망을 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 치료감호제도를 역이용하려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이는 바 정확하고 공정한 정신감정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인의 자격이 요구된다할 수 있다. 1) 정신감정인은 정신과전문 의여야 한다. 2) 정신감정인은 재판관관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률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전한 객관성이 요구되어진다. 의사는 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정신감정인은 공정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신감정인은 정신감정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치료감호소 이전의 감정서를 볼 때에 형식적이거나 부적절한 정신감정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며, 현재에도 정신감정서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다만 판사의 판단에 맡길 뿐이다.

개선책으로는 정신감정인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하여 정신감정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두명의 정신과 의사의 정신감정을 필요로 하는 방법, 스칸디나비아 3국처럼 정신감정을 감독하는 기관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정신감정을 기피하는 데에 있다. 우선 정신감정료의 현실화, 감정기간중의 보호문제, 감정인의 증인소환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 2. 질병에 따른 표준화

정신감정인의 각자의 기준에 따라 심신상실이나 미약, 혹은 책임능력의 유무, 사리변별력의 유무를 결정하므로, 일정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대체적으로 정신질환을 정신병과 신경증, 인격장애로 구분할 경우, 신경증의 수준과 인격장애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병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책임무능력, 경한 경우는 한정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기준을 위해서는 법정신의학회나 혹은 치료감호특별위원회 등 정신과 의사와 법조인들과의 토론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임.

또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데에는 치료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물남용자의 경우 제조나 판매 등과 관련된 사람들의 배제가 필요하며, 단순투약자라 하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면 법적인 이득이 있어야 하며, 치료에 순응치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단순투약의 경우 6개월에서 2년사이의 형을 병과받는 데, 그동안의 문제는 치료감호를 받으면 원래의 형기간보다 더 길게 있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기피되고 있었으며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교도소로 보내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치료 후 교도소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를 잘 받으면 잔여형기를 면제해주거나 기출소를 통해 일찍 사회로 내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병과형을 받는 경우 치료후 교도소로 이송하는 것은 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가출소등으로 중간처우시설이나 사회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응 및 재활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3. 치료감호의 다양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는 입원치료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은 그 경중에 따라 입원 및 외래치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기간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를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증상이 경한 경우 외래치료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입원치료 후 가중료를 통해 외래치료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병행하여 사회적응과 재활을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호관찰관은 외래치료를 감독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하여 다시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에는 외래치료의 조건이 붙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형평성을 전제로 일정한 징역형이상으로 치료감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선을 선고시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 4. 정신보건법과의 연계

현재에는 치료감호소에서 퇴원한 후 자발적인 외래치료외에는 치료적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치료감호소는 중구급이 필요한 위험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치료하고 위험성이 완화되면 일반정신병원이나 국립정신병원으로 이송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덜 한 경우에는 지정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치료중에 위험성이 증가되어 중구급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소로 이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과의 연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Delivery system을 통해 자연스러운 사회화를 이룰 수 있다.

### 5. 인권의 문제

환자의 인권적 문제는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것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이 잘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이를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다.

### 치료감호 현황

치료감호소에 환자가 입원하는 순서대로 흐름을 표변서 설명을 하겠다.

우선 치료감호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회보호인가 치유인가?

법률상 입원 기간으로 중구급소에 해당한다. 행정직을 소년보호직으로 소년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법무부관계자나 법원관계자들도 치료감호소를 명관하면 시설이 교도소나 보호감호소에 비하면 호반급 수준. 죄수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법무부관계자들은 치료보다는 감호에 치중하리한다. 반면에 의료진은 죄인보다는 환자라고 보고 치료의 중점을 두려고 한다. 현재에는 감호에 중력하는 분위기다.

고등안 치료감호소가 신설되고 많은 노력 끝에 7년 만에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명칭을 얻어 의료계 쪽으로는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망월을 가능한 한 빠른 치료로 입원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화시키기 위하여 지방과의 협력을 중시하게 된다.

초기에는 치료적 관점을 중시하였으나 약물중독환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문제가 많아지면서 의료실에서도 관리의 편리함 때문에 감호를 선호하는 것 같다. 의사들의 수가 부족하여 치료적 관념이나 개념이 사실상 어려워 문제환자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처음으로 환자를 보게되는 경우가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다. 점차 정신감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병원에서는 감호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아 치료감호소로 정신감정이 거의 물리고 있다. 그러나 정신감정을 하는 의사의 수가 적어 일정한 숫자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료감호의 선고가 주로 정신감정의 결과에 의존하는데 정신감정이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부정확한 감정이 된다면 치료감호의 의의가 그만큼 줄어든다. 치료감호소가 생기기 이전의 정신감정서를 평가해 볼 때 부정확하고 형식적인 감정서가 많았다. 정확한 정신감정을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입소하면 검사명동에서 약 한달간 평가를 거쳐게 되어있다. 입소하는 환자들을 대개 약물중독자들과 일반정신과환자들로 구분이 된다. 약물환자들 중에는 치료

의지가 없거나 오히려 치료감호를 이용하여 혜택(수감기간이나 시설)을 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한자들도 있어서 이러한 한자들의 치료적 분위기를 해치고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약물중독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 선고시에 치료의지와 치료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정신과환자들의 경우에도 재발이 잦아 서너번씩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성들의 질염(일경정중유균, 충동조절장애)이다.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정확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병동이 매정되면 치료에 들어간다.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주를 이룬다. 치료감호소의 시설이나 인적자원은 다른 병원들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대개 1년여정의 기간을 보이기 때문에 효과적일 직업재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만 직원들의 치료적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치료 중에 2개월마다 동태보고를 하고 5개월마다 퇴소심사를 하게 된다. 동태보고는 대부분 형식적이지만 퇴소를 위한 절차로 보여진다. 동태보고에서 호전을 보인다든 기록이 있으면서 퇴소심사에 임하게 된다. 퇴소가 가능한 경우에만 심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을 전적으로 주치의의지에 달려있어 주치의의 긍정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보호위원회의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침이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증을 헤아리게 된다. 사회보호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생각에 따라 기준이 변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형량징역을 고려하여 살인의 경우 아무리 치료감호 잘 되더라도 5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면 5년이 지난 후에도 심사에 올리지 못하는 식이다. 변호위원이 바뀌어 따라 이러한 기준도 바뀌게 된다. 순수하게 치료적 효과만을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영구 은 6개월마다 연장심사를 하고 있다. 연장의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를 하여 허기를 보는 식이다. 물론 정신보건법이 따라 처리하기 때문이다.

퇴소결정이 나면 자발적으로 외래치료를 하지 않는 한 연결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 정신과 질환은 무조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개방회를 통해 입원기간을 줄이고 중간치우시설이나 집중적인 외래치료를 사회회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따라서 치료감호소에도 중간치우시설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를 강생보호소와 민간 요양시설 등과 연계하고 있으나 호파나 숫자 면에서 제한적이다.

약물중독자의 입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따도 치료감호소의 가장 골치거리인지만, 무엇보다 약물중독자들의 대부분은 성격적 문제가 있어 일반환자들보다 다루기가 어렵다.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이들을 범죄자로 보느냐 환자로 보느냐에 따라 치료적 방침이 달라진다. 일

민정심판관들과 같이 수용을 하여서는 서로간에 이해만 줄뿐이다. 따로 상담할 시설이 치료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직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중독환자들은 병과형을 받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면 병적 이득이 주어지지 아니.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별점 어득보다 손해가 많다. 처음 약물병통을 운영할 때에는 1년 과정으로 개설하였다. 그러나 보니 정역형을 받은 기간 보다 더 오래동안 치료를 하게되어 한자들의 재발이 심하였다. 심지어는 말짱을 띄워서라도 코르티손 기계를 원했다. 일단 코르티손이 끊어지면 형기까지 끝나는 날 바로 퇴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감호소의 있으면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보느냐가 불안한 것이다.

## <지정토론 2>

###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

■ 김정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

#### 1.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렉터박사의 환상, 그리고 대구지하철화재참사 보도기사까지

우리사회가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태도 또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범죄와 정신질환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그 사회적 낙인은 배가 넘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인식은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구에 비해 살인, 폭력 등의 범죄행위가 더 많은가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결과는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조성남, 1992). 또한 보건복지부가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용의자 신상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보면 ▲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이 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보도는 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연결시키는 선입견을 갖게 함 ▲ 장애인에 사회적 약자이지 공격자가 아님, 그럼에도 장애인을 공격자로 각인시키는 이러한 보도태도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에게 공격자로서의 이미지를 덧씌워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범죄율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 <범죄발생율 비교> (2000년도 범죄백서)

구분	일반인 (10만명당)	정신병적 장애 (176,396명)
전체범죄	2,951명(4.0%)	3,597명(2.0%)
교통범죄 제외	2,545명(2.5%)	3,201명(1.8%)

구분	총검거인원(A)	정신장애자(B)	구성비율(B/A)
전체범죄	2,126천명	3,597명	0.17%
교통범죄 제외	1,448천명	3,201명	0.22%
강력범죄	481천명	1,760명	0.37%

※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등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는 매스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였다.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표현은 사회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때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가 있다. 바로 '양들의 침묵'이다. 나도 그 영화를 보기 위해 비디오를 빌렸던 기억이 난다. 유명했기에 아류작, 유사품도 나왔던 영화, 한편으로 '렉터박사'라는 신화에나 등장할법한 인물을 실존인물인듯 둔갑시켜버린 영화...

내가 이 영화에 주목하는 것은 등장하는 하니발 렉터박사 때문이다. 정신과의사면서 범죄심리전문가,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이고 9명이나 죽인 살인자,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결국 탈출하게 되고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렉터가 자신을 죽일까봐 공포에 떨게 된다는 그 영화의 스토리가 내가 주목하는 이유이다. 이 영화 한편으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확실한 공포를, 정신질환자와 극악무도한 범죄사이의 등식(=)을 우리 생각 언저리에 심어준 확실한 영화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렉터박사와 같은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그러한 범죄는 없다. 그러나 보통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사회적인 위협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같은 공간안에서 생활할 수 없고 그래서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과 같은 사회적 격리가 용인되기까지 정신장애에 대한 악성 이미지를 만드는 매스미디어가 한몫 단단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와 같은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결정적 영향력은 사람들의 뇌리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남긴다. 그러나 지어낸 허구라 생각할 수도 있는 영화가 그러한 실수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더한 것은 방송국의 뉴스보도, 신문보도다. 영화와 다르게 신문과 뉴스보도는 당연히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리라고 대다수 국민들은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개구리소년,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까지 언론의 보도태도는 정신장애인을 범죄화 하는데 일조했다.

어느 신문사설(신문사, 2003년 3월)에서는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는 정신장애인이 500만 정도나 된다는데 정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예비범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국가의 관리소홀로 범죄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냐'며 정신질환자 모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해야 한다고 핏대를 올렸다. 물론 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은데 대한 분노감이 깔려있었겠지만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예비범죄자들이나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된다는 내용인 버젓이 신문사설에 실리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 태도 >

▲ 2002년 11월 3일 K모방송국 9시 뉴스에서는 “개구리소년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앵커 : 대구 개구리소년들의 사인이 타살로 결론남에 따라서 이제는 과연 누가...  
 기자 : 법의학팀의 분석대로라면 ... 정신이상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00대 교수 : (중략)...따라서 정신이상자나 성격이상자가...  
 기자 : 경찰은 이에 따라 실종 당시 대구 일대의 정신이상자와 염총, 공기총 불법소지자를 중심으로 재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2003년 2월 18일 K모방송국 9시뉴스에서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보도”에서 수없이 “정신장애인 소행” 입을 외쳐댔고 다음과 같은 말도 서슴치 않고 내뱉었다.  
 기자 : 뚜렷한 동기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서 어떤 자신의 신병을 기관 화플이성 방화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김씨가 이전부터 정신병력을 앓은 기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또 오늘 범죄도 우발적으로 자신의 신병을 비판해서 뭐 막말로 나죽고 모두 한꺼번에 죽자는 그런 심정으로...  
 앵커 : (끼어들며)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2. 치료와 감호, 어느 것이 우선인가?

1) 사회방위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인권침해 - 본질적으로 반인권적 제도

사회보호법에는 다분히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기존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에 부합하지 않으면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도, 심실상실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사회방위와 유지를 위해서는 격리수용, 감금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인신을 구속하며, 치료감호는 ‘치료가 될 때까지’라는 주관적이고 위험한 기준으로 인신을 구속하고 있다. 이렇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더군다나 ‘사회보호법’ 자체가 제정된 과정이, 삼청교육대 교육생들의 사회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혁명위원회를 통해 제정했고, 그 주된 내용도 재사회화와 특수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격리와 억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호법은 반인권적 발상에서 제정된 법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아무리 치료감호제도 자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속에 함께 규정된 치료감호제도 또한 다분히 격리와 억압이라는 기제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며, 격리와 억압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인권적 제도인 것이다.

2) 치료와 감호, 둘다 가능한가?

현재 치료감호제도의 운용상의 문제를 논외로 한다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치료감호제도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형법 10조에만 의하면 심실상실과 미약의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형을 경감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은 형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호법으로 ‘감호하면서 치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치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과연 사회적 위험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논하면서 치료라는 이름의 격리를 해도 되는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면, 국가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그 개인의 치료의 문제는 의료 시스템에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즉 현재 정신보건법이 있고, 게다가 정신보건법에는 강제입원과 가족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에 대한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미래의 위험성을 운운하며 별도의 처벌규정으로 강제 감호시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게다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인간의 미래를 과연 심실상실과 미약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나 하는 것도 의문이다. 결국 국가가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감호한다는 것은 실상 형법 10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나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안에서도 그동안 술한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의 논의는, 치료감호제도가 “치료를 위한 감호”라는 미명아래 모순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되, 극단의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객관적인 입장(사법부 산하의 정신감정위원회 등)에서 명확히 판단될 경우는 일정정도 기간의 감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명확한 판단과 일정정도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실제로 치료감호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부정기형이라는 절망감과 치료보다는 통제위주로 복종을 강요당하는 상황,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출소유무가 결정되는 점 등에서 “치료와 감호”의 쌍두마차가 가능하느냐의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3. 치료감호제도의 이후방향

#### 1) 치료를 중심으로 한 탈시설화, 지역화, 정상화 - 치료처분을 다양화해야

우리가 앞서 형사책임이 없는 사람의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않되, 단 극단의 위험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강제치료할 수 있다는 논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치료란 어떠한 하는가를 살펴볼 수 없다. 현대의 정신질환과 관련한 핵심용어들은 '탈중앙화, 의료의 공영화(사유화 및 관료주의와 구분), 지역화(소규모화), 단기입원, 비수용화(비요양원), 지역사회 거주 중심의 인권적 치료, 탈병원화, 종합병원의 외래치료 중심'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 논의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중증정신질환=중범죄' 이라는 등식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격리수용하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아졌고, 결국 치료감호제도는 현대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방향과 상관없이 수용과 감금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공주치료감소에 만들어진 1000명상의 치료감호소와 치료감호소에 거주하는 인력이 있는 이상에야, 국가는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지 탈시설화, 지역화의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기는 힘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치료감호제도는 법 자체와 법을 집행하고 있는 감호소까지 바꾸어내지 않는 이상, 탈시설화, 지역화, 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의 경우는 명확하게 '치료받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치료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신보건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며, 행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아닌 담당부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2) 당사자가 주체로 나설 수 없는 한계, 제도적으로 밀받침되어야

사회보호법하에 벌어지는 보호감호제와 치료감호제는 국가폭력의 공통분모를 가졌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에서는 활동초기 연대체의 이름을 정할때부터 "보호감호폐지나, 사회보호법폐지나 '의 논란이 있었으나'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 '로 결정한 데에는 국가폭력이라는 공통분모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공대위내에서도 보호감호제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이 쉬었을지도 모르겠다. 보호감호제도는 청송감호소에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알려내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감호의 한계와 인권침해를 알고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으며, 더군다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나서거나 주장하기 힘들다는 점, 가족들이 오히려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바랄 수 있다는 점 등이 치료감호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었다. 결국, 치료감호 제도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권을 구조적 시스템 내에서 감시하지 않으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기가 쉽다. 이는 정신질환자 전반의 문제이지 치료감호제도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국가가 그 운영책임이 있는 제도이니 만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사회보호법폐지와 함께 그동안의 치료감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처우가 어떠한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감호가 필요한 사람들인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또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논의의 위험성, 즉 흔히 '정상'으로 분류되는 인간형만을 사회가 용인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일방적 흐름에 대한 반성과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그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대한 우리의 고민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 <지정토론 3>

###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박현수 부회장 ■

정신장애인의 범죄행위는 정신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못한 경우에 병의 증상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의 범죄행위는 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호법 제2조에서는 (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2.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되어 보호받아야 하는 일반범죄자와 동일시하여 같은 차원의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든지, 사회보호법에서 정신장애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정신보건법, 마약류관련법등)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또한 사회보호중 치료감호의 제도는 정신장애인의 범죄등의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사후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중인 정신보건법에서 치료보호의 부분을 삽입하여 정신보건전문가의 치료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정신장애의 치료적 행위를 받지 못하여 일어나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적 부담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치료비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서 보호의무자인 가족들의 적극적인 치료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예방을 할 수 있어야겠다.

또한 운영상 치료감호의 제도도 치료적 개념과 사회복지의 개념이 아닌 사회격리의 감호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치료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정신질환과 마약류를 구분하여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보호관찰기간동안 사회적 자원(정신보건시설등)과 연계하여 사회복귀의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정신장애인의 편견조장, 사회적 범죄예방,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효과적인 사회복지회복을 위하여 사회보호법에서 탈피하여, 정신보건법, 정신장애인 치료를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정신장애인의 권익이 향상되어 사회 속에서 소외받지 않고 살아가는 권리가 보장되어야겠다.

#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출소자 사회정착의 건

---

수신: 최용규 의원 귀하

발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자: 2003. 11. 24 (총 7쪽, 표지 포함)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02-741-5363)

천주교인권위 김덕진(02-777-0643)

내용: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출소자 및 교도소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건

## □ 사회복지법 폐지 이후 출소자 사회복지정책의 건

### 1. 피보호감호자들의 현재 상황

- 피보호감호자들의 죄명을 보면 절도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의 60%이상이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교육만을 이수 받은 사람임
- 또한 이들의 입소 전 경제상황은 80%이상이 사회 빈곤계층인 것으로 파악됨
- 피보호감호자중 가출소 석방자의 재범율은 30%이상(가출소 후 3년 이내)이며, 지난 2000년 재범율은 46% 이상임(2년 이내)
- 결국 현재의 사회복지법은 이중처벌 논란을 떠나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지정책에 기여하고 재범을 저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표1> 피보호감호자의 보호감호 원인 죄명별 현황 (단위:명)

죄명	절도	강도	폭력	상습사기	기타	계
인원	1,132(73.2%)	226(14.6%)	94(6.1%)	49(3.2%)	2.9%	1,546(100%)

표2> 피보호감호자의 학력 현황 (단위:명)

학력	무학	초퇴·졸	중퇴·졸	고퇴·졸	대졸	계
인원	338(21.9%)	623(40.3%)	393(25.4%)	186(12.0%)	6(0.4%)	1,546(100%)

### 2. 사회복지법 폐지 후 상황 및 이후 대안

- 2003년 11월 현재 보호감호 집행자 약 1000여명
- 사회복지법 폐지 후 이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취약한 사회적 기반과 경제력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따라서 감호소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필요함
- 현재 2003년 이후 감호소 가출소자들 중 30%이상이 재범을 저질러 다시

구속된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갱생보호공단에서 숙식제공을 받고 일정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사회적 지원이 마련된 약 60여명의 출소자들의 경우((2003년 11월 현재) 재범률 0%임
- 결국 갱생보호공단과 같은 사회적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 대책은 추후 일반 교도소 출소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함.
- 현재 감호소를 비롯해 일반 교도소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3개월 이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로 수혜혜택 및 일부 무의탁자에 대한 갱생보호공단 입소
- 하지만 갱생보호공단은 시설과 인력,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체 무의탁 출소자 중 20%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많은 무의탁 출소자들이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미인가 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이 열악한 형편임. 또한 일부 민간시설의 경우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분분한 상태임
- 결국 감호소 출소자들의 안정적 사회복지정책을 돕고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립지원 시설 및 센터 등의 확충이 절실함.

표1> 교정기관 입소자 재범자 현황 (단위:명)

구분	입소자	초범	2범 이상	재범자 비율(%)
년도별				
계	76,745	35,008	41,737	54.4
2000	38,224	17,488	20,736	54.2
2001	38,521	17,520	21,001	54.5

표2> 감호소 출소자 재범자 현황 (단위:명)

구분	가출소 인원	재범자(명)	재범율(%)
년도별			
2000	487	228	46.8
1986~2000	9,867	3,249	32.9

\* 가출소자의 재범율 : 1999년 이전- 가출소 후 3년 이내 금고이상의 실행 등.



표3> 갱생보호공단 입소자 재범자 현황

(단위:명)

구분 년도별	숙식제공 종료자(명)	재범자(명)	재범율(%)
계	3,597	21	0.6
2001	1,761	12	0.7
2002	1,836	9	0.5

### 3. 사회보호법 폐지 후 대안

- 피보호감호자 1인에 대한 1년 수용비용은 750~800만원 선(시설유지비, 관리자 인건비, 식비 등 일체포함)
- 갱생보호공단의 경우 1인에 대한 1년 수용비용은 300~400만원 선(수용비, 의료비, 급식비, 직업훈련비, 관리자 인건비 등 일체포함)
- 청송감호소의 유지 및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기 위한 비용을 자립지원 시설 및 센터 등에 전환할 경우 현재보다 더욱 좋은 양질의 서비스와 교육을 감호소 출소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범을 저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새로 설립될 자립지원 시설 및 센터는 출소자들의 정서와 사회적 편견을 고려해 소규모 숙식생활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적당하며 본인 신청자에 한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게 함.
-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 훈련, 취업알선 등은 센터를 건립해 각 분야별로 지원한 후 각 교육은 경쟁력 있는 민간시설에 위탁하거나 국가가 실시하는 방향으로 지원함. 이 역시 본인 희망자에 한해 가능토록 함.

### □ 참고 1- 국내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

#### 1. 한국갱생보호공단

- 1995년 6월 1일 설립
- 2003년 현재 전국에 12개 지부, 5개 출장소
-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써 자립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등을 제공
- 2003년 국고보조금 51억 8,100만원 책정(전체 예산의 75%정도)
- 1년 평균 숙식제공자 약 1,800여명

#### 2. 사단법인 담안선교회

- 서울 면목동에 소재
- 피보호감호 출소자들에 대하여 숙식제공 및 취업알선
- 담안선교회내 토너·카트리지 재생공장을 설치해 운영
- 2003년 국고보조금 1억 700만원 책정
- 2003년 현재 약 120여명 숙식제공
- 민간단체로 운영되다보니 운영비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음(?)

### □ 참고 2- 외국사례

#### 1. 영국 - Hostel제도

19세기 영국에서 발전한 제도로 형기 4년이상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용자중 석방 예정일 10개월전에 선정하여 Hostel에 수용하여 거주,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시키는 제도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시설로 자격이 있는 수용자가 선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입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Hostel 제도는 최근 들어 훨씬 발전된 제도로 변화되고 있다. 영국 NACRO가 운영하고 있는 Housing제도는 NACRO(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가 관할지역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임가로 임대하여 출소자 등 거주할 곳이 없는 자들을 수용하여 취업할때까지 신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취업을 알선한다.1)

## 2. 미국

### 가. 출소전 생활지도 교육

미국의 경우, 출소전 생활지도 교육은 시설 내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교육을 하는 외에 중간처우의 집 형태도 있고, 이외에 연방과 계약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회내 처우센터(Community Treatment Center)에서 90일~120일간 석방 전 지도를 실시한다.

### 나. 출소후 사회복귀 교육

#### 1) 국가- 중간거주소

미국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석방자를 위하여 "Half way House"(교도소와 사회간의 중간거주소)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Half way House라는 것은 취업처를 구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하며 유혹이 없는 도시요지에 일반가정과 같은 모양으로 설치하며 대개 12~30명 정도의 가석방준비자를 수용하고 약 1, 2개월간 거주하게 하면서 출소 후의 생계를 준비하게 하는 시설이다. 교도소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사람들은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의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각자 취업처를 찾는 등 사회 재적응을 준비하게 하며, 관리자는 종종 기업계, 노동계, 직업소개소 기타의 대표적 인사들을 초빙해서 거주자들의 취업문제, 가정문제, 그 밖의 출소후의 취업 문제들을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sup>2)</sup>

#### 2) 민간

이상에서 본 것처럼 미국에서는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유권적 갱생보호제도가 갱생보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만기출소자등 임의적 갱생보호의 대상자는 그 수효가 적고 규모도 작아 미국의 형사정책 체계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현재에도 민간인에 의한 출소자 보호단체가 거의 모든 대도시마다 여러가지 명칭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동 규모는 극히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지원을 거의 받음 없이 민간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sup>3)</sup>

1) 이정찬, 현대행형학, 법조문화사, 1978, 312p

2) 갱생보호공단 홈페이지 참조

3) 갱생보호공단 홈페이지 참조

## 3. 일본

일본에서도 가석방 전 2-3개월 간 행형 시설내의 개방적인 시설에 수용하여 일반 사회와 가까운 상태로 처우하고 있으며 만기석방의 경우 석방 전 1주일 내지 10일간에 걸쳐 석방절차, 갱생보호, 직업안정, 후생복지 등의 제도와 이용절차 등을 지도한다.<sup>4)</sup>

4) 한상훈,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처우의 활성화 방안, 2003. 5. 15. 법무부 교정공무원 워크숍 발표문

## <보도자료>

###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 결정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03-1205-01

수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발신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 결정에 대한 환영 논평

날짜 : 2003년 12월 5일

문의 : 천주인권위원회 김덕진 (777-0641~3, 016-706-8105)

1. 언제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각 언론사들과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송보호감호소는 이 시대의 가장 소외 받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그 문제점은 지난 20여 년간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3. 지난해 말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감호자들이 집단단식농성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그 외침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3월, 26개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법의 폐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정치권들도 호응해,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고, 다 시도부들도 동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12월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의 폐지와 '치료보호법'의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지었고, 12월 5일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4.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열린 우리당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는 이 때에, 절박한 민생현안, 인권현안들부터라도 시급히 처리하기를 바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지켜 볼 것입니다.
5. 이에 공대위는 환영논평을 냅니다.

## <환영논평>

### 열린 우리당의 [사회보호법폐지 당론 결정]을 전폭 환영한다.

드디어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모양이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동법의 폐지를 확정하였고, 오늘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폐지법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뿐만인가,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이미 당 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결의하였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두 당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이미 기정사실화 하였고, 그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 불원간 동법이 이 땅에서 사라질 확실한 전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나아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청송의 보호감호소에서는 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 단식투쟁도 수차례 진행하였다. 언론도 이러한 노력에 지지를 보내주었고, 그 결과 '사회보호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권침해법'이라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마저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하였으니,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급변 열린 우리당의 당론확정과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움직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함께 발의 된 '치료보호법'의 입법청원도 높이 평가한다. 물론 향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기존 법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인권의 문제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국회가 각종 정치현안으로 인해, 정작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절박하고 중요한 민생현안, 인권현안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휘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공언한 정치권의 후속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국민들은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런 정치인들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들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확정 지어 청송보호감호소에 갇혀 있는 1천여 명의 감호자들이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분발해 주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

2003년 12월 5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법의 이름으로 지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폭력?

### -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검토해 봐야할 때

정범구 의원 (새천년민주당, 경기 고양일산갑)

“옷가방 하나 절도했다고 징역 2년에 감호 7년을 선고받고 현재 4년째 감호를 살고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징역 2년도 형량이 많다고 느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감호 7년까지 안겨주다니 이젠 말도 안됩니다. 전과자이니까 이곳 감호소에서 죽으라는 겁니까?”

“저는 2년 3개월을 이곳에서 보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곳에서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86세 이신데 제가 이곳에서 나갈 때까지 살아 계실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감호소라는 곳은 감호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는 커녕 있던 가정도 파괴시키고 사회복귀를 도와주려던 지인들의 연고마저 끊어지게 하여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가정파괴로 인하여 자녀들마저 탈선현장으로 내몰아 대를 이은 범법자의 집안으로 몰락시키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와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는 감호자는 보호감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성은 파괴됩니다.”

“형기를 종료한 자를 사회보호법이라는 미명아래 7년 동안이나 가두어놓는 보호감호제도는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현대판 고려장’이요 국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지르고 있는 횡포이며 또 다른 폭력입니다.”

본 의원의 사무실로 전달되어 온 청송감호소 재소자들의 하소연이다.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은 삼면이 반변천으로 둘러 싸여있고 나머지 한 면은 광덕산이 있는 오지이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에 청송보호감호소가 있다. 청송보호감호소에 있는 1,600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은 제1감호소와 제2감호소로 나뉘어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도 출소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를 받게 된다.

과거 전과가 있던 진모씨는 늦은 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단순하고 치기 어린 생각으로 행한 절도미수죄로 인해 징역 2년을 살고 난 후 보호감호소에서 지금 5년째 생활하고 있다. 그는 단순절도 미수범에 불과한 자신이 흉악범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 아래서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있다. 그가 보기에 감호소에서의 생활은 산 자의 생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린 채 서서히 죽어가는 자의 무덤같은 삶이라며 편지를 보내왔다.

### 보호감호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보호감호는 유사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다시 유사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그 정의가 사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1980년 제정된 법률로서 다섯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 근본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고질적인 상습범과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 재범의 위험성 방지 등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도는 삼청교육의 뒷처리용으로 급조된 것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이 법이 만들어진 시점인 1980년 자체가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정상적인 헌법질서가 무시된 상황에서 과도한 사회통제와 억압을 위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법률들이 양산되던 시점이다. 사회보호법 자체가 국회가 아닌 당시 신군부 통제하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졸속으로 통과됐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탄생한 사회보호법은 이후 끊임없이 이중처벌로

인한 인권침해 및 위헌성 논란에 부딪히게 된다.

###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 감호자의 현실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1,600여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은 2002년 4월, 10월, 11월, 2003년 5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단식농성을 벌였다. 가출소(假出所)의 확대, 근로보상금의 인상, 그리고 사회보호법 폐지가 이들의 요구사항이었다.

범안자체가 갖고 있는 위헌성을 떠나 보호감호의 근본 취지가 범법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이를 통해 범죄율을 낮추는데 있다면 지금의 보호감호제도는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막고 이들이 범법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은 현행 보호감호제도가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차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무부 자체의 한 통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피보호감호자였던 출소자들의 재범율은 33.5%(1994년~96년)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교도소 출소자의 재범율이 23.7%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감호소 출소자들의 사회복귀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호감호의 결과가 사회보호법의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피보호감호자의 74%가 절도이고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50.4%로 절반이 넘는다. 이러한 통계는 피보호감호자의 대부분이 빈곤계층출신으로 범죄양상 역시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라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의 상습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결국 그들의 빈곤, 낮은 교육수준, 사회적 결여 등에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해 내는 보호감호제도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재범율 통계에서 보듯이 실제로 오랜 수용생활을 겪은 사람들일수록 사회정착 및 적응능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어 보호감호제도가 범죄의 상습성을 고치거나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감호자들은 가족 해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받는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회와 완전히 차단되어 생활을 하는 감호자들은 사회에도, 가정에도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오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많은 피감호자들이 이혼을 하고 부모형제들과 이별을 하고 있다. 한 달에도 십여통씩 전해지는 감호자들의 편지에는 외아들로서 양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제사한번 지내지 못한 불효에 대한 설움과 뽀뽀이 흠어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다.

보호감호제는 가정이 있는 감호자들을 장기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들 자녀들의 탈선가능성 까지 높여 "대를 이은 범죄자"를 양산시킬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 보호감호제도와 사회보호법의 향후 행로

법무부에서는 지난 5월 "보호감호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호감호 수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국과 제도 운영 및 가출소 심사를 결정하는 보호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보호국으로 일원화하고, 대도시 인근으로 보호감호시설을 이전,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시스템 강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런 개선안은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의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은 건드리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개선안이 발표된 뒤인 6월에는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이 사회보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보호감호를 심사하는 기관이 법원

이 아닌 법무부 보호국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안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996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사회적 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이전의 합헌결정 시 제기됐던 강력한 소수의견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위헌판단의 소지가 있다.

### 국회에서는 사회보호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사회보호법은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대로 이미 그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이 법은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의 법정신에 배치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법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을 돌아볼 때 이것은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만들어진 법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단지 사회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마약 및 알코올 중독의 팽배 등 현재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를 규정한 대안적 법률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감호제도의 완전한 폐지로 인한 사회의 불안 가중을 고려하여 동종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외의 대체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방식으로 구금수용하여 재사회화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현 제도가 아니라 재교육을 통한 탈범죄화, 기술·인성교육이 교도소에서부터 행해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형방법을 연구하여 형법 안에 편입되게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독일도 보안감호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와 달리 요건의 엄격성, 형법상의 가중처벌규정과 보안감호의 동시 처벌 금지, 범죄유

형의 위험성(성범죄, 살인·강도죄 등), 수형자와 구별되는 감호수용자에 대한 특례처우 등 매우 엄격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질적인 상습범죄자(habitual offenders)에 대해 보호감호제도 대신 "삼진아웃제(three-strikes law)"를 도입하여 동종범죄에 대한 3회째의 범죄행위에 대해 가석방없이 최소 25년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1967년 영국의 보안감호 폐지, 1981년 프랑스의 형사후견인제도의 폐지, 1965년 형벌과 보안처분의 일원화로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없앤 스웨덴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도 이제 이 제도의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제게 아버지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게 지아버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게 사위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게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한 보호감호자의 절규에 이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응답하여야 할 때이다.

#### 4. 법무부정책위원회 관련

-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인적 프로필
- 회의 횟수 및 그간 진행된 회의의 주제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법무부정책위원회 관련 자료는 불임과 같습니다.

불임 법무부정책위원회 현황 1부.

< 불임 >

## 법무부정책위원회 현황

### 1. 정책위원회 구성 및 인적프로필

#### 가. 성 격

-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 나. 구 성

- 위원장 등 총 12명 (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3명)
-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법조계·인문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

※ 위원회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3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

#### 다. 정책위원회 위원 인적프로필

- 별첨

### 2. 정책위원회 회의 횟수 및 회의 주제

회 차	일 자	주 제
제 1회	2003. 5. 20	○ 정책위원회 운영방안 검토 ○ 검찰개혁의 기본방향 검토
제 2회	2003. 5. 26	○ 검찰개혁관련 과제 검토 ○ 법무행정 개혁과제 검토
제 3회	2003. 6. 02	〃
제 4회	2003. 6. 09	○ 보호감호제도 검토

## 【 별첨 】

위원명단

직위	성명	나이	현직	주요경력	분야
위원장	안경환 (安京煥)	54세	서울대 법대 학장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전국 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현)	학계 및 시민단체
부위원장	정상명 (鄭相明)	53세	법무부 차관	○ 사시 17회 합격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위원	강신섭 (姜信燮)	46세	세종 변호사	○ 사시 23회 합격 ○ 대법원 재판연구원	법조계
위원	권태선 (權台仙)	48세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 한국일보 기자 ○ 한겨레신문 기자, 민권 사회1부장	언론계
위원	김상준 (金尙遵)	41세	대법원 재판연구원	○ 사시 25회 합격 ○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조계
위원	박상기 (朴相基)	50세	연세대 법대 학장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장(현) ○ 반부패국민연대 이사(현)	학계 및 시민단체

직위	성명	나이	현직	주요경력	분야
위원	배종대 (裴鍾大)	53세	고려대 법대 학장	○ 고려대 기획처장 ✓ ○ 한국형사법학회 상임 이사	학계
위원	이재희 (李在禧)	49세	충북대 철학과 강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현) ○ 충북여성포럼 부대표(현)	여성계
위원	이종왕 (李鍾旺)	54세	김앤장 변호사	○ 사시 17회 합격 ○ 대검 수사기획관	법조계
위원	한인섭 (韓寅燮)	43세	서울대 법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터 소장 ○ 법과사회이론학회장(현)	학계 및 시민단체
위원	박상길 (朴相吉)	49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 사시 19회 합격 ○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위원	문영호 (文永皓)	52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사시 18회 합격 ○ 서울고검 공판부장	



# 전문위원명단

직위	성명	나이	현재	주요경력	비고
전문위원	김진석 (金鎭奭)	44세	인하대 인문학부 (철학)교수	○ 서울대 철학 학사 ○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서양철학 석사, 박사	학계
전문위원	양현아 (梁鉉娥)	42세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계약교수	○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사회학 박사 ○ 워싱턴대 방문교수	학계
전문위원	여현덕 (呂鉉德)	42세	연세대 국제학대학 원 교수	○ 대통령 민정수석실 과장 ○ 외국어대 연구교수	학계

### 근로일과표

결재 일자	과장		계	작업명: 수 량 과 정 능률	작업등급: 시 간 과 정 능률		정호원호: 수 량 과 정 능률	년 월분 성 명: 공 전	
	제	공장			시 간	과 정		수 량	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근로성적등급	근로성적	근로성적	근로성적	근로성적	근로성적	근로성적	근로성적	근로성적
21	총점	총점	총점	총점	총점	총점	총점	총점	총점

2003년 1월 1일부터 근로보상금이 인상되기 전의 근로보상액수  
1등급 4.800 2등급 3.900 3등급 3.100 4등급 2.400 5등급 1.00 6등급 1.400 7등급 1.100

수:3점, 우: 2.4-2.9, 미: 2.0 - 2.3점  
양: 1.5 - 1.9, 가: 1.5 - 1.6 점

자비부담물품 종류 및 가격표  
(2003. 1. 1 - 2003. 12. 31까지)

품목	회사	공급가격	품목	회사	공급가격
사발면	한국야쿠르트	500	남자스킨	(주)라미	5,400
간장	동해식품	785	남자로션	"	5,400
빵	기린	300	여자스킨	"	5,400
식빵	기린	5758	여자로션	"	5,400
우유	롯데우유	195	면알말	길성섬유	1,090
사이다	해태음료	690	면도기	의정부(교)	11,000
콜라	롯데칠성	710	운동화	화승	10,070
쓰세지	K&D	1,340	세수버누	무궁화	500
요구르트	디엠푸드	520	편지기	대전(교)	230
마가린	(주)대상	620	편지봉투	"	210
사탕	로얄제과	670	편지봉투	"	1,300
초코바	(주)삼아	345	화장지	전주(교)	270
두유	연세우유	18/5	노트	영등포(교)	310
배우김치	도원식품	1,360	손목시계	오리엔트	9,300
감귤유스	매일유업	470	시계줄	"	1,200
고추장	공주(교)	890	전화카드	KT	4,700
포카리스웨트	동아	1,310	대티올	이태리	154
500과자	롯데제과	300	면장갑	개풍산업	185
김기름	교정협회	1,900	세탁버누	세주	278
달걀계	"	1,850	수세미	신한물산	308
오징어	"	1,000	위생대	유한	1,130
멍콩	"	1,000	교무장갑	성물산업	905
맛김	"	400	블렌싱	모나미	82
벌치조림	"	1,700	블렌팬	모나미	113
연성세제	LG	1,435	피누파	플라코	620
사각팬티	전방군제	2,160	버러넷	칠성	154
반팔런닝	"	1,500	한소이유서	영등포(교)	290
차술	크리오	840	줄수리	국제	6,300
차약	씨제이	1,310	간전지	센파워	565
사진첩	교정협회	700			

※계란 및 과일류 가격은 수시 변동함

자비부담의약품 허가품목 내역서(2003. 4. 1부터)

순번	품명	제약회사	규격	허가량	단가	적용종
1	가그린	동아제약	250밀리	2	1,560	구강청정제
2	게브랄터	유한양행	100정	1	12,830	영양제
3	게보린	삼진제약	10캡셀	3	1,810	두통 및 진통제
4	젤포스엠	보령제약	20포	1	13,120	위, 십이지장염
5	구심	보령제약	45환	1	4,750	심장질환
6	기넥신F	SK제약	50캡셀	1	14,580	혈액순환 개선제
7	기가홀빈연고	상아제약	15그람	2	2,800	무좀, 백선 치료제
8	거풍지보환단	보람제약	개	5	260	고혈압, 중풍, 손발저림
9	그랑페롤	유한양행	60C	1	8,160	영양제(비타민 A,D,E)
10	나리스타	삼천당	12밀리	2	1,560	비염치료제
11	노루모	일양약품	12포	5	1,560	위산과다, 속쓰림
12	니조칼액	한국약선	60밀리	1	8,170	두부 비듬 제거 등
13	대일랜드	대일화학	10매	2	220	열상 완화
14	더모베이트액	그락소	25밀리	2	2,860	두부피부질환
15	더모베이트연고	그락소	10그람	1	1,040	피부질환
16	데놀	녹우제약	120정	1	29,900	위, 십이지장 궤양
17	덴티놀	영일약품	50캡셀	2	4,670	잇몸질환치료제
18	도미나크림	태극약품	10그람	3	4,490	기미, 주근깨
19	도브비누	존슨&존슨	100그람	3	1,560	피부세정제
20	듀스파타린	중외제약	100정	1	11,680	급 만성 대장염
21	두리방	초당약품	150캡셀	1	20,520	혈액순환 개선제
22	라미실크림	노바티스	15그람	2	10,200	피부질환
23	락테올	동화약품	100캡셀	1	15,550	급 만성 대장염
24	레모나	경남제약	20포	5	3,160	영양제(비타민 씨)
25	로프록스	한독약품	3그람	1	21,600	손, 발톱무좀
26	리박신	대화제약	50그람	1	2,160	외용소염진통제
27	립프러스	상아제약	3.5그람	2	1,980	입술 보호제
28	마이덤	유유산업	15그람	2	730	무좀연고
29	모나신발모고	삼공제약	20그람	2	2,400	발모촉진제
30	물파스	현대약품	45밀리	2	540	타박상, 벌레물린
31	물팍로션	현대약품	100밀리	2	1,460	소염, 진통제
32	미늘트로키	경남제약	24정	3	3,400	인후염, 기관지염
33	메모비스	영일약품	60캡셀	1	9,550	시력저하 예방제
34	멘소레담로션	보령제약	100밀리	1	3,270	소염진통제
35	반질연고	삼공제약	60그람	2	3,500	주부습진 각화증
36	베이비로션	존슨&존슨	200밀리	2	4,780	피부 보습제
37	베이비오일	존슨&존슨	200밀리	2	4,870	피부 보습제
38	베이비파우더	존슨&존슨	100그람	1	2,520	습진, 피부질환
39	복합마테카솔	동국제약	10그람	2	4,490	피부염, 외상습진
40	복합엘씨-500	구주제약	50캡셀	1	9,910	영양제
41	비나플로-F	유유산업	50캡셀	1	11,080	영양제
42	베콤-C	유한양행	100정	1	12,830	영양제
43	세레스톤지	유한양행	15그람	2	3,040	피부질환치료제
44	센스타입	일동제약	750밀리	1	6,990	구강청결제
45	솔박타	근화제약	160밀리	1	4,200	여성용(개인청결제)
46	스멕타	한국파마	90밀리	1	2,850	장세척, 변비
47	시메티딘	대웅제약	30포	1	10,460	대장염치료제

피보호 감호자 부식물 차림표

(2003.1.1 - 1.31)

순번	품명	제약회사	규격	허가량	단가	비고
48	시위나	삼광제약	25밀리	1	1,200	비염
49	시린메드	부광약품	90그램	3	1,560	과민성치아질환
50	신도톱	국제약품	15밀리	1	1,560	결막염, 안질환
51	신신파스	신신제약	5매	5	810	소염, 진통, 습포제
52	씨큐란	동아제약	120정	1	16,910	혈액순환 개선제
53	산크밍	구주제약	15밀리	1	10,400	안질환
54	셀간좌약	환인제약	10개	1	5,540	치질
55	셀간연고	환인제약	30그램	1	5,880	치질
56	아락실	부광제약	8g/20포	1	8,250	변비
57	아로나민골드	일동제약	60정	1	10,780	영양제
58	안신환	익수제약	1환	5	950	심신안정 등
59	알마겔	유한양행	20포	1	2,910	위, 십이지장제양
60	오제나	한림제약	100정	1	7,770	비염
61	용각산	보령제약	25그램	2	3,270	기관지
62	우루사	대웅제약	60캡셀	1	15,160	간 기능 개선제
63	원방우황청심환	한보제약	1환	5	4,750	뇌졸중 협심증
64	유니코트	대신약품	30그램	1	1,530	피부질환
65	유락신연고	상아제약	50그램	1	990	움, 가려움증
66	유판-C	유유산업	20포	5	2,680	영양제
67	인사들	동국제약	100정	1	29,160	잇몸질환
68	잔탁	그락소	60정	1	31,110	위, 십이지장 궤양
69	정로환	동성제약	48정	2	1,560	설사, 식체
70	제놀파스(쿨)	상아제약	5매	5	1,560	소염, 진통습포제
71	제놀파스(핫)	상아제약	6매	5	1,560	소염, 진통습포제
72	제놀스틱	상아제약	40그램	1	2,250	소염, 진통제
73	젤콤	종근당	1정	2	650	구충제
74	카네스텐	마이엘	30그램	2	5,230	무좀치료제
75	카미졸크림	삼천리	20그램	2	930	무좀, 피부질환
76	캠비손연고	한독약품	20그램	2	2,590	피부질환
77	케노펜겔	일동제약	50그램	1	3,520	소염, 진통제
78	케토톱	태평양	6매	5	2,040	관절염
79	다이레놀	한국안센	10티	5	1,280	두통, 진통제
80	토비콤	안국약품	60캡셀	1	3,910	시력보호제
81	트라스트페취	SK제약	3매	5	2,870	관절염, 건초염
82	티눈밴드	신신제약	8매	1	1,220	티눈제거
83	파로돈탁스	부광약품	100그램	3	8,640	잇몸질환
84	푸레파라손연고	일동제약	28그램	2	4,300	치질
85	푸레파라손좌약	일동제약	12개	2	7,260	치질
86	푸루나졸	대웅제약	30캡셀	1	84,490	손, 발톱무좀 등
87	피엠티	경남제약	30밀리	1	4,490	무좀 치료제
88	헬스칼	동화약품	72정	1	9,930	칼슘보충제
89	헤모골드	안국약품	40정	1	7,120	빈혈치료제
90	후시딘	동화약품	10그램	2	4,490	피부질환치료제
91	후릭소나제	그락소	120회분	2	12,930	비염
92	웨스탈프러스	한독약품	10캡셀	5	1,900	소화제
93	홍삼분	인삼공사	100캡셀	1	9,310	홍삼분말제
94	한방파스	제일약품	6매	5	2,200	소염, 진통습포제
95	베로텍	한국베링거	15밀리	2	4,140	기관지천식
96	펜잘	종근당	10티	5	1,430	두통, 치통
97	쑥집떡	부광약품	10포	2	12,530	관절염 등

요일		아침		점심		저녁		비고
요일	일별	품명	가격	품명	가격	품명	가격	
청송제2보호감호소								
월	1,398.96	콩나물국	89.12	돈육찌개	374.48	우거지국	127.74	환자식 두유1개
		꽃고추조림	144.64	멸치양파조림	113.01	오징어볶음	258.73	
		김 치	93.00	단무지무침	105.24	김 치	93.00	
월	1,185.04	미역국	143.16	들깨무국	59.32	곰 탕	184.29	환자식 두유1개
		오징어젓무침	213.08	열무무침	194.93	오이무침	126.26	
		김 치	93.00	김 치	93.00	각두기	80.00	
화	1,129.22	호박감자국	102.79	닭고기국	198.97	생선묵국	126.57	환자식 두유1개
		콩조림	84.70	마늘고추장	133.20	김치떡볶음	216.99	
		김 치	93.00	김 치	93.00	각두기	80.00	
수	1,272.86	잡뽕국	143.60	참치찌개	144.71	생선매운탕	216.93	환자식 두유1개
		우엉조림	178.40	삼동초무침	215.85	야채계란찜	94.41	
		김 치	93.00	김 치	93.00	김 치	93.00	
목	1,398.31	복어국	168.65	돼지고기국	425.54	창국장찌개	124.09	환자식 두유1개
		생선묵조림	110.04	멸치젓무침	105.16	물미역오이무침	181.83	
		김 치	93.00	김 치	93.00	김 치	93.00	
금	1,069.82	두부탕	127.71	된장찌개	114.99	감자탕	197.11	환자식 두유1개
		김치볶음	138.47	무말랭이무침	131.15	콩나물무침	94.39	
		각두기	80.00	김 치	93.00	김 치	93.00	
토	1,196.32	근대된장국	165.77	수제비국	126.41	김치찌개	130.42	환자식 두유1개
		감자조림	142.10	파래무침	156.85	야채닭조림	208.78	
		김 치	93.00	김 치	93.00	각두기	80.00	
동일식군내 상호 대체 가능 단가 초과 및 미달사는 품량으로 조절가능 조리내역서상의 수량은 조리전의 생채량임 김치, 각두기, 겉절이, 맛김, 무생채는 상호대체가능						국,찌개류 21회 조림, 무침, 볶음류 21회 김치류 21회 계 63회	1월1인당 평균액	1,278.10

03.2.1 - 2.28)

1일당가	아 침		점 심		저 녁		비 고
	품 명	가 격	품 명	가 격	품 명	가 격	
	1.156.69	미역국	146.36	홍합국	135.39	시금치된장국	
	생선묵조림	127.24	양파된장	125.08	갈치조림	218.75	
	김 치	93.00	단무지무침	96.98	김 치	93.00	
1.125.78	호박감자국	133.16	배추된장국	110.17	곰 탕	184.43	
	김치볶음	157.74	오이양배추무침	169.09	콩나물무침	100.20	
	맛 김	85.00	김 치	93.00	김 치	93.00	
	된장찌개	139.69	참치찌개	165.34	양배추국	135.21	
1.133.71	감자실치조림	120.46	무도라지무침	160.44	야채닭조림	246.59	
	김 치	93.00	김 치	93.00	각두기	80.00	
	콩나물국	68.39	청국장찌개	141.04	닭고기국	220.39	
1.170.62	무말랭이볶음	175.36	카 레	146.65	두부조림	128.34	환자식 두유1개
	김 치	93.00	김 치	93.00	무생채	104.46	
	호박된장국	139.57	돼지고기국	441.75	순두부찌개	170.70	
1.492.07	양파절임	94.46	멸치젓무침	125.21	떡볶음	241.40	
	김 치	93.00	김 치	93.00	김 치	93.00	
	무다시마국	108.23	생선묵국	146.73	미역국	146.36	
1.046.54	마늘고추장	152.10	생두부	114.04	야채계란찜	100.10	
	김 치	93.00	김 치	93.00	김 치	93.00	
	복어국	183.80	콩나물국	68.39	감자국	121.76	
1.175.73	김치볶음	157.54	오이무침	178.83	고등어조림	199.23	
	각두기	80.00	김 치	93.00	김 치	93.00	

국 찌개류 21회 조리, 무침, 볶음류 21회 김치류 21회  
1일 1인당 평균액 1,200.16원

03.3.1 - 3.31)

1일당가	아 침		점 심		저 녁		비 고
	품 명	가 격	품 명	가 격	품 명	가 격	
	1.161.16	시금치된장국	110.37	참치찌개	168.69	닭미역국	
	소시지 조림	167.99	김/양념장	70.52	오이양파절무침	186.86	
	김 치	93.00	김 치	93.00	각두기	80.00	
1.018.53	양배추국	136.51	감자다시마국	136.46	콩나물국	85.11	
	호박볶음	123.69	간마늘절임	156.72	야채계란찜	101.06	
	김 치	93.00	김 치	93.00	김 치	93.00	
	미역국	148.96	달래된장국	157.06	돈육찌개	399.56	
1.367.85	생선묵국	132.09	생두부	115.89	콩나물무침	103.70	
	김 치	93.00	겉절이	124.61	김 치	93.00	
	청국장찌개	157.54	냉이국	202.62	순두부찌개	183.30	
1.478.48	감자햄조림	231.89	상추쌈	163.42	야채닭조림	254.14	환자식 두유1개
	김 치	93.00	김 치	93.00	단무지무침	99.58	
	콩나물국	85.11	돼지고기국	446.17	시금치된장국	110.37	
1.392.33	김치볶음	166.74	멸치젓무침	130.49	가자미조림	182.47	
	맛 김	85.00	김 치	93.00	김 치	93.00	
	두부국	105.80	김치찌개	135.55	바싹찌개	208.86	
1.193.65	어묵조림	193.29	오이무침	180.47	콩나물무침	103.70	
	김 치	93.00	각두기	80.00	김 치	93.00	
	무 국	93.46	복어국	187.76	곰 탕	188.15	
1.232.45	감자볶음	102.80	양파절임	115.46	김치떡볶이	245.49	
	김 치	93.00	김 치	93.00	무생채	113.34	

국 찌개류, 21회 조리, 무침, 볶음류 21회 김치류 21회\*1일 1인당 평균액 1,251.29

03.4.1 - 4.30)

1일단기	아 침		점 심		저 녀		비 고
	품 명	가 격	품 명	가 격	품 명	가 격	
1.358.26	무다시마국	128.89	호박된장국	156.42	돈육찌개	263.06	환자식 두유1개
	감자꽃고추조림	156.96	열무무침	208.98	시금치무침	164.97	
	김 치	93.00	김 치	93.00	김 치	93.00	
1.229.60	참치찌개	170.59	청국장찌개	169.04	감자탕	221.56	환자식 두유1개
	생선묵조림	141.39	오이양배추무침	153.53	콩나물무침	107.50	
	김 치	93.00	깍두기	80.00	김 치	93.00	
1.352.66	버섯야채국	223.69	시금치된장국	103.87	미역국	144.36	환자식 두유1개
	감자햄조림	278.89	생두부	115.79	미나리무침	207.09	
	김 치	93.00	김 치	93.00	김 치	93.00	
1.187.72	무된장국	137.66	김치콩나물국	117.43	순두부찌개	192.60	환자식 두유1개
	새우호박조림	217.06	김/양념장	70.42	오이무침	173.57	
	김 치	93.00	김 치	93.00	김 치	93.00	
1.407.41	된장찌개	178.15	돼지고기국	448.32	김치찌개	136.55	환자식 두유1개
	생선묵조림	137.11	멸치젓무침	133.80	콩나물무침	107.50	
	김 치	93.00	김 치	93.00	깍두기	80.00	
1.247.14	양배추국	139.11	감자찌개	143.89	생선묵국	160.39	환자식 두유1개
	김치볶음	179.74	상추쌈	219.42	야채계란찜	101.56	
	깍두기	80.00	김 치	93.00	겉절이	130.06	
1.196.90	김치찌개	136.55	콩나물국	85.01	닭미역국	183.06	환자식 두유1개
	두부조림	146.00	짜장	208.51	마늘고추장	165.60	
	깍두기	80.00	단무지무침	99.18	김 치	93.00	
			국,찌개류 21회 조림,무침,볶음류 21회 김 치 류 21회 계 63회		1일1인당 평균액		1.281.97

3.5.1 - 5.31)

1일단기	아 침		점 심		저 녀		비 고
	품 명	가 격	품 명	가 격	품 명	가 격	
1.312.14	김치콩나물국	110.98	근대된장국	206.02	곰 탕	228.40	환자식 두유1개
	감자호박조림	133.51	무도라지무침	174.64	마늘고추장	192.60	
	깍두기	80.00	김 치	93.00	김 치	93.00	
1.204.70	무 국	86.78	계란파국	200.37	감자국	142.91	환자식 두유1개
	소시지조림	177.04	짜장	208.66	마늘종무침	103.83	
	김 치	93.00	단무지무침	99.13	김 치	93.00	
1.134.87	김치찌개	136.80	생선묵국	146.74	닭미역국	232.91	환자식 두유1개
	감자조림	142.30	생두부	108.34	콩나물무침	101.80	
	깍두기	80.00	김 치	93.00	김 치	93.00	
1.344.81	콩나물국	84.81	배추된장국	128.79	돈육찌개	391.66	환자식 두유1개
	김치볶음	163.34	김/양념장	70.22	야채샐러드	240.00	
	깍두기	80.00	김 치	93.00	김 치	93.00	
1.438.40	들깨부국	89.25	돼지고기국	444.57	호박된장국	139.06	환자식 두유1개
	두부조림	127.15	멸치젓무침	115.66	갈치조림	243.72	
	김 치	93.00	김 치	93.00	김 치	93.00	
1.221.23	양배추국	147.66	미역국	148.51	청국장찌개	153.34	환자식 두유1개
	생선묵조림	136.59	양파된장	132.74	오이무침	223.42	
	김 치	93.00	김 치	93.00	김 치	93.00	
1.124.37	열무된장국	147.01	홍합국	134.25	두부국	96.95	환자식 두유1개
	김치볶음	163.34	잡채	213.77	야채계란찜	111.06	
	맛 김	85.00	깍두기	80.00	김 치	93.00	
			국,찌개류 21회 조림,무침,볶음류 21회 김 치 류 21회 계 63회		1일1인당 평균액		1.255.03

## 전체 목차

### 제1권 - 공대위 내부자료

- 간담회 참석 요청, 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 2003.2.19.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의 폐지(개선)를 위한 인권시민단체간담회, 2003.2.26.
- [제안서]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연대기구' (가칭) 참여 요청 건 및 기간 경과 보고, 2003.2.28.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연석회의 회의 안건, 2003.3.5.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차 연석회의, 2003.3.5.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2차 연석회의, 2003.3.11.
- 내부워크샵 참석 요청, 2003.3.17.
-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사업계획서, 2003.3.19.
- 사회보호법의 내용 및 그 문제에 대하여, 이상희, 2003.3.20.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내부워크샵 정리메모, 2003.3.20.
- 사회보호법 소책자 회의 보고, 2003.4.3.
- 서신, 이상희, 2003.4.6.
- 사회보호법 공대위 향후 일정과 4월 7일 회의에서 논의 할 내용, 2003.4.7.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의 기본활동방향, 2003.4.7.
- 사회보호법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공동사무국, 2003.4.7.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4차 집행위, 2003.4.7.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5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3.4.21.
- 토론회 준비팀, 2003.4.21.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6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3.5.9.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6차 집행위 회의록, 2003.5.9.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전략, 2003.5.13.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 8차 집행위원회, 2003.6.25.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9차 집행위, 2003.7.
- 공대위 전체수입, 2003.7.1.
- 치료감호 연구단위 모임 보고, 2003.7.7.
- 사례를 통해본 치료감호소의 문제, 2003.7.7.
- 치료감호 연구단위 모임 <2차>, 2003.7.14.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10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3.8.12.

- 치료감호와 인권-네번째 워킹보고합니다, 2003.9.15.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12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3.10.7.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15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4.1.16.
-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1년 활동 평가서, 공대위 사무국, 2004.3.10.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17차 집행위 회의안건지, 2004.5.27.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쟁점 정리, 2004.6.16.
- 이호중 교수님 의견, 2004.6.

### 제2권 - 활동자료(1) (2003년 이전)

#### ■ 2002년 이전

- 사회보호법위헌여부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박찬운, 2002.11.16.
-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호소문, 조석영, 2002.12.

#### ■ 2003년

- 청송감호소 피감호인에게 보내는 편지, 천주교인권위원회, 2003.2.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 및 헌법소원,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3.10.
- '문명국가의 수치'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전, 2003.3.11.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03.3.11.
- 현황, 치료감호소, 2003.3.13.
- 질의서(헌법재판소 하경철 재판관 수신), 조석영, 2003.3.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송2보호감호소 방문 보고, 2003.3.
- 청송 제2보호감호소 방문 협조요청,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4.9.
-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안(초안), 공대위 사무국/열린회의 워크샵팀, 2003.4.10.
- 청송 제2보호감호소 방문에 대한 협조의 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4.10.
- 사회보호법TFT 제3차 모임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2003.4.11.
- 진정에 대한 회신(1035 양대길 수신), 법무부, 2003.4.14.
-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 진행상황, 미상, 2003.4.14.
- 위임장 등 작성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청송제2보호감호소, 2003.4.16.
- [자료집]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샵 첫 번째>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해신을 위한 열린회의/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4.29.

- 헌법소원제기 및 감호소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 이상희, 2003.5.2.
- 진정에 대한 회신(권보상 수신), 법무부, 2003.5.7.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자 참석요청,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15.
- 청송제2보호감호소 고충처리반, 2003.5.16.
- 현황, 치료감호소, 2003.5.16.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초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21.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요지, 이호중, 2003.5.22.
-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유해정 수신), 법무부, 2003.5.23.
- 그대는 보이는가, 그대는 들리는가, 반인권의 상징, 청송의 실태 그리고 저 처절한 외침을,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03.5.24.
- [보도자료] 청송 2감호소 단식농성 4일째-출소자 1인 청와대 앞 시위 돌입-공대위 청송단식농성 유감 성명발표, 2003.5.26.
- 청구이유 보충서(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 귀중), 이상희, 2003.5.27.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집회 개최 및 법무부 항의방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28.
- [공문] 청송 제2 보호감호소 단식농성과 관련 면담 신청(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29.
- [보도자료] 「보호감호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법무부 "보호감호 혁신 방안" 발표, 법무부, 2003.5.29.
- 법무부 개선안을 비판한다, 피보호감호자 대표단 일동, 2003.5.30.
- 법무부의 '보호감호 혁신 방안'에 대한 반박 성명서-참여정부는 보호감호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청송의 문을 열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30.
- [보도자료] 성명서-청송보호감호소 단식투쟁, 언제까지 정부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한변호사협회, 2003.5.31.
- 진정서(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귀중), 조석영, 2003.5.
- 보호감호행정 혁신방안 검토(안), 법무부, 2003.5.
- [보도자료] 청송보호감호소 단식농성에 대한 공대위 기자회견 및 출소자 증언대회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2.
- 소장(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율 및 죄명별 분류'에 관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유해정/법무법인 한결, 2003.6.3.
- [소책자]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2003.6.13.
- [보도자료] 청송 피보호감호자 616명 헌법소원 제기 및 피보호감호자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17.
-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2003.6.18.
- 헌법소원 질의서 분석결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5.
- [공문] 법무부 보호감호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질의서(법무부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19.
- [공문] 사회보호법 관련 헌법소원 협조 요청(민변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19.
- 정보공개청구서(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송제1감호소 및 청송 제2감호소에 수감중인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전과비율), 유해정, 2003.6.19.
- [공문] "사회보호법은 왜 반인권 악법인가?"-지역단체 활동가 및 시민 간담회 개최 요망,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6.24.
-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유해정 수신), 법무부, 2003.6.
- 보호감호제도를 위한 변명, 법무부 보호국장 정동기, 2003.6.
-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2003.6.
- [자료집]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7.1.
- [공문] 질의서에 대한 회신(공동대책위원회 수신), 법무부, 2003.7.5.
-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유해정 수신), 법무부, 2003.7.5.
- 제1차 사회보호법폐지추진소위원회, 대한변협, 2003.7.14.
- [보도자료]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 2003.7.29.
- 중재신청이유(언론중재위원회 수신), 법무부 보호국장 정동기, 2003.7.
- 준비서면(언론중재위원회 수신), 법무부 보호국장 정동기, 2003.7.
- 헌법재판소의 청송감호소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28개 인권단체 의견서, 2003.8.6.
-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의견서>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법무부 장관 및 정책위원회 위원, 정책기획단 수신), 26개 민간단체, 2003.8.21.
-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8.26.
- 편지(강금실 법무부장관 수신),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03.8.27.
- 사회보호법폐지 법안 발의 환영 논평,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
- [보도자료] 사회보호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운영실태 직접 점검키 위해 청송보호감호소 방문, 법무부, 2003.9.4.
- 치료감호와 인권-그동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김정하, 2003.9.15.
- <보호감호제 운영개선이라는 법무부 입장에 부쳐> 보호감호제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6.
- 제3차 사회보호법폐지추진소위원회, 대한변협, 2003.9.17.
- <기자회견문> 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2003.9.17.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7.
- [공문]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동참의 건(대한변호사 협회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17.
-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2003.9.19.
- 보호감호가출소자 관리 강화 방안 시행계획 보고, 법무부, 2003.9.20.
- 편지(22일 감호소 가출소자 상경 기자회견 경과보고 등), 조석영, 2003.9.24.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법무부 앞 1인시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24.
- [보도자료] 청송 피보호감호자 단식농성 돌입 보도요청,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9.29.
- 청송보호감호소 실태조사 방문, 대한변호사협회 법무과, 2003.9.29.
- 업무현황, 청송제1·2보호감호소, 2003.9.29.
- 청송보호감호소의 단식 3일째를 맞아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활동가 517인 선언,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활동가들, 2003.10.1.
- [보도자료] 청송보호감호소 단식 10일째,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국회앞 시위 10일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0.8.
-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위하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0.13.
- 심신장애자 등에 관한 보안처분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0.
- [보도자료] 치료감호제도 관련 의크샵 보도요청의 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1.10.
- [자료집]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워크샵,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1.11.
-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출소자 사회정착의 건(최용규 의원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1.24.
- [보도자료]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 결정을 환영한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2.5.
- 법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폭력?-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검토해 봐야할 때, 정범구 의원, 2003.
- 법무부정책위원회 관련, 2003.
- 근로일과표, 2003.

- 자비부담물품 종류 및 가격표, 2003.
- 자비부담의약품 허가품목 내역서, 2003.
- 피보호 감호자 부식물 차림표, 2003.

### 제3권 - 활동자료(2) (2004년 이후)

#### ■ 2004년

- [보도자료]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 200여명 무기한 집단단식농성,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1.11.
-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의견서> 보호감호제도 폐지의 당위성 및 향후 출소자 대책(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수신), 26개 민간단체, 2004.1.12.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인권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2004.1.13.
-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에 대한 환영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1.13.
- [보도자료] 청송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및 국회의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1.16.
- [공문]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원로 및 대표자 선언 동참의 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1.27.
- [보도자료] 보호감호제도 존재 재검토키로, 법무부, 2004.1.27.
- [공문]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원로 및 인사 선언 동참의 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1.30.
- [보도자료]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 단식농성 돌입,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2.2.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 및 대표, 인사 312인 선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2.3.
-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원로 및 대표 선언, 2004.2.4.
- [공문] 청송 제2감호소장님 면담 및 피감호자 대표 면담의 건(청송 제2보호감호소장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3.8.
- [공문] 청송 제1감호소장님 면담 및 피감호자 대표 면담의 건(청송 제1보호감호소장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3.10.
-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청송감호소 보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3.10.
- 주요업무계획, 법무부, 2004.3.31.



- [보도자료] 피보호감호자 사망사고, 청송제1보호감호소, 2004.5.13.
- [보도자료] 법무부 정책위원회,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권고, 법무부, 2004.5.18.
- [논평]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7.6.
- [공문] 사법연수원 연수생 및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방문의 건, 천주교인권위원회, 2004.8.10.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들어가며, 노회찬, 2004.8.26.
-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004.9.7.
- [질의서]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질의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9.9.
- 청송감호시설 통합운영 방안, 교정국, 2004.9.
- 법무부 보고서(2004. 9.)에 대한 반박의견, 2004.9.
- 보호감호제 및 사회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4.10.21.
- 소위원회 구성현황, 법제사법위원회, 2004.12.23.
-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4.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2004.7.22. 요구자료), 2004.
- 가출소후 단기 재범자 현황, 2004.
- 2005년
- [질의서]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질의서(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 수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2.14.
- 치료감호소 수용현황 등 참고자료, 법무부 보호국, 2005.6.15.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보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6.21.
- 6월 임시국회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6.21.
-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의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서, 이호중, 2005.6.21.
-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엄형국, 2005.6.21.
- 법무부의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독일의 사례, 이진호, 2005.6.21.
- 기존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점, 조성남, 2005.6.21.
-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의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05.6.21.
-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의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05.6.21.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2005.6.21.
- 사회보호법폐지와 보호치료에 관한 법무부 법률안에 대한 의료인 의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05.6.21.
- 치료 명분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기 없는 인신구속 정당화하는 법무부의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반대한다, 2005.6.21.
-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5.6.21.
-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에 즈음한 공대위 성명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6.29.
- [보도자료] 보호조치결정에 있어 의견진술기회 미부여는 신체의 자유 침해 및 적법절차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2005.8.25.
- 2006년 이후
- 조사결과보고서-치료감호소 시설 및 치우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2팀, 2006.8.
- 연도미상
-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호감호 실태조사 설문(회람용)
  - 보호감호 실태조사 설문 I (피감호자용)
  - 보호감호 실태조사 설문 II (교정공무원용)
  - 보호감호 실태조사 설문 III (법학교수, 변호사)
- 박영두 사건 자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제4권 - 법령 및 법안 자료

- 사회보호법 시행 당시 법령
- 사회보호법
- 사회보호법 시행령
- 피보호감호자분류치우규칙(법무부 훈령 제447호, 2001.7.30.)
- 치료감호소당직근무지침
- 감호근무준칙(1987.10.26. 내규 제6호)
-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1998.12.30. 내규 제130호)
-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규칙(1987.10.20. 법무부훈령 제200호)
- 의료직공무원의보직관리기준(1986.9.1. 법무부훈령 제171호)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1987.10.20. 법무부훈령 196호)
- 진료심의 위원회 운영규정(1987.11.19. 내규 제16호)

- 피보호감호자근로보상금관리규칙(1982.4.10. 법무부령제241호)
  - 간호사간호조무원 복무 규정(1988.2.10. 내규 제24호)
  - 진료심의 위원회 운영규정(1987.11.19. 내규 제16호)
  - 보호감호소 업무처리지침(예규교 제250호 81.11.25.)
  - 피보호감호 병과수형자 처리지침(예규보 제277호 83.6.21. 예규보 제284호 84.3.27.)
  - 감호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규칙(예규 제251호 81.12.5. 개정. 83.2.14. 예규 제272호)
  - 감호자 근로성적등급사정규칙(예규작업 제248호 81.11.25.)
  - 감호자 근로보상금 계산규칙(예규작업 제249호 81.11.25.)
- 사회보호법 폐지 관련 법안과 검토의견

1) 16대국회

- 범죄행위를한심신장애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2003.7.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2003.8.28.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훈, 2004.2.
-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2003.8.28.
  -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서상섭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훈, 2004.2.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대표발의), 2003.12.5.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훈, 2004.2.
- 치료보호법안(최용규의원 대표발의), 2003.12.5.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2003.12.6.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훈, 2004.2.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2003.12.6.
- 청원소개의견서, 정범구, 2004.2.3.

2) 17대국회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발의), 2004.9.15.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최용규의원 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2004.9.15.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노희찬의원 대표발의), 2004.9.18.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검토 의견, 법무부, 2004.10.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제안설명서, 노희찬, 2004.12.24.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4.

-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검토 의견, 2004.

■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법령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정령안, 법무부, 2005.9.

제5권 - 참고문헌과 언론보도

■ 참고문헌

- 심재우, 형벌과 보안처분-보안처분법의 개선을 위하여, 고시연구 169호(1988. 4), 고시연구사
- 박정수, [르뽀] 청송 감호소를 가다, 사법행정 제30권 제7호(1989.7), 한국사법행정학회, pp. 54-62
- 박진홍, 피보호감호자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무연구 17(90.12), 법무연구원, pp.301-359
- 고득영, 정신장애자의 범죄와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행정전공, 1992.8.
- 송문호 등,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 정규원,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검토
- 허영, 사회보호법의 위헌성
- 박지현,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보안관찰법 제2조 등에 관한 합헌결정(92헌바28 1997.12.05)에 즈음하여
- 판례
  - 피구금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자유에 대하여 가하는 제한의 허용범위, 대법원 2003.7.25. 2001다60392판결
  -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11.27. 92헌바28
  - 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10.4. 95헌마24
  -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11.28. 95헌바20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8.29. 94헌마1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1.25. 91헌마178
  -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1992.12.8. 92헌마276
  -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4.1. 89헌마1785-100-10 9-129-167(병합)
  -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10.27. 89헌마105,125,126(병합)
  - 사회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9.29. 89헌가86

-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7.14. 88헌가5,8,89헌가44(병합)

#### ■ 언론보도

- 상습범 보호감호 제법익제 효과 없다, 법률신문 조용철 기자, 2001.2.9.
- “삼청교육 6만명 자의적 검거 인권유린” 피해자 명예회복보상 권고, 서울신문 이창구 기자, 2002.10.2.
- 의문사추 활동결산 보고서- ‘사회보호 감호제 폐지’, 경향신문 안홍욱 기자, 2002.10.16.
-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2002.10.17.
-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지징벌, 인권하루소식 김보영, 2002.11.1.
- <논평>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인권하루소식, 2002.11.2.
- 청송감호소 ‘단식농성’ 파문, 한겨레 박주희 기자, 2002.11.4.
- 청송감호소 농성 500명으로, 한겨레 류이근박주희 기자, 2002.11.5.
- 보호감호제 폐지요구 논란, 경향신문 정성엽 기자, 2002.11.5.
-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하루소식 김보영·이주영, 2002.11.7.
- [사설]이런 보호감호제는 폐지해야 한다, 한겨레, 2002.11.8.
-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인권하루소식 김보영, 2002.11.9.
-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인권하루소식 김보영, 2002.11.13.
- [인권을 가둔 보호 감호소](1)재범우려 출소자 교화한다며 재수용 “장기 격리로 사회적응 막아”, 한겨레 류이근박주희 기자, 2002.11.14.
- [인권을 가둔 보호 감호소](2)형 다 살고도 보호감호 또 보호관찰,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2.11.15.
- [인권을 가둔 보호 감호소](3-끝) ‘사회적응’ 위한 제도 개선 절실, 한겨레 류이근박주희 기자, 2002.11.15.
-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2.14.
-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인권하루소식 배경내, 2003.2.26.
- 국가인권위 시민사회단체·학계 연대 ‘인권TF’ 본격 가동, 서울신문 구혜영 기자, 2003.2.26.
-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3.12.
- [인권 프리즘]반향심 가르치는 보호감호소, 서울신문 구혜영 기자, 2003.3.13.
- 문명국가 수치, 사회보호법 폐지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소식, 2003.3.13.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①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3.28.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②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4.4.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③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4.11.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④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인권하루소식 김보영, 2003.4.18.
- 쥐꼬리 일당에 시대뒤진 직업훈련 “취업 도움안돼”, 한국일보 고성호 기자, 2003.4.22.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인권하루소식 김보영, 2003.4.25.
-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⑥<끝>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2003.5.2.
- 강 법무, “보호감호제, 획기적 안 준비할 것”, 인권하루소식 배경내, 2003.5.14.
- 康법무 “보호감호소 이전 검토”, 경향신문 김형기 기자, 2003.5.14.
- ‘사회보호법’ 은 삼청교육대의 사생아?, 브레이크뉴스, 2003.5.22.
- 피감619명 “보호감호제 현소”, 김남석 기자, 2003.5.23.
- 왜냐면 토론/사회보호법은 소리 없는 사형선고, 한겨레 장유식, 2003.5.24.
- 현장/ “밥 굶는 것만이 유일한 의사표시 방법”, 한겨레 박주희 기자, 2003.5.26.
-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인권하루소식 배경내, 2003.5.27.
- [사설] ‘사회보호법’ 폐지 국회가 나서라, 한겨레, 2003.5.27.
-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인권하루소식 고근예, 2003.5.28.
-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브레이크뉴스, 2003.5.28.
- 청송감호소 르포-600여명 단식 ‘장벽속의 외침’, 경향신문 최슬기 기자, 2003.5.29.
- <2003 핫이슈> 보호감호 제도, 경향신문 조장래 기자, 2003.5.29.
- 인권침해 ‘덜’ 하겠다?,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5.30.
- <사설> 보호감호 개선안인 폐지 검토해야, 문화일보, 2003.5.30.
- 법무부, 보호감호제 대폭개선, 세계일보 신진호 기자, 2003.5.30.
- <논평>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인권하루소식, 2003.5.31.
- 기고/문제많은 보호감호제 폐지 마땅, 경향신문 박찬운, 2003.5.31.
- [사설] ‘보호감호’ 국가인권위는 뭐하나, 한겨레, 2003.5.31.
- [사설] 보호감호제 폐지할 때다, 서울신문, 2003.5.31.
- [사설] 보호감호제 없애야 한다, 한국일보, 2003.6.3.
- “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의 걸림돌”, 인권하루소식 고근예, 2003.6.4.
- 현장클리/ “근로보상금 3천원 말 되나요”,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절규, 경향신문 안홍욱 기자, 2003.6.4.
- 청송감호소 가출소한 40대의 절규/ “20만원 훔쳐 20년 갇혀 이젠 세상이 두려워요”,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03.6.4.
-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소식 임재은, 2003.6.4.
- [사설]청송감호소 실태조사부터 하자, 한겨레, 2003.6.5.

- 왜냐면 토론/장발장의 편지, 한겨레 김홍철(가명), 2003.6.17.
- “보호감호제 재범방지 도움 안된다”, 문화일보 우승현 기자, 2003.6.17.
-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인권하루소식 고근예, 2003.6.18.
- “재범방지인가” “이중처벌인가” 보호감호제 존폐 논란 또 수면위로, 동아일보 길진균 기자, 2003.7.31.
- 보호감호 출소자 국가상대 손해소 승소,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2003.8.5.
- [보호감호 이젠 풀자(1) 청송감호소 르포, 한겨레 김태규 기자, 2003.8.12.
- [보호감호 이젠 풀자(2) ‘곱정역’ 논란,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3.8.13.
- [보호감호 이젠 풀자(3) 유럽 ‘감호’ 서 배운다(상) 시설 둘러보니,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3.8.14.
- [보호감호 이젠 풀자(3) 유럽 ‘감호’ 서 배운다(중) 대상 누군가,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3.8.16.
- [보호감호 이젠 풀자(3) 유럽 ‘감호’ 서 배운다(하) 운용 어떻게,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3.8.18.
- [보호감호 이젠 풀자(4) 좌담, 한겨레, 2003.8.19.
- [사설] ‘보호감호’ 개선보다 폐지가 좋다, 한겨레, 2003.8.20.
- 독자편지/보호감호제 이중 옥살이 가혹해, 동아일보 이영철, 2003.8.23.
- 보호감호소 가출소 대폭 확대, 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2003.8.26.
- 보호감호제 폐지안 국회제출, 한겨레 김소희 기자, 2003.9.2.
- [사설] ‘보호감호제’ 16대 국회서 없애자, 한겨레, 2003.9.3.
- [사설]사회보호법 꼭 유지할 이유 있다, 한겨레, 2003.9.15.
- 보호감호자 수 줄인다-법무부, 연내 절반수준, 문화일보 권은중 기자, 2003.9.15.
-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9.18.
- 야, 사회보호법 올안 폐지, 한겨레 김영배-안창현-서정민 기자, 2003.9.18.
- [사설]사회보호법 폐지에 나선 한나라당, 한겨레, 2003.9.19.
- 피보호감호자 역대 최대 143명 가출소, 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2003.9.19.
-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9.20.
- 보호감호 시작전 심사제 도입, 한겨레 안창현 기자, 2003.9.20.
- “청송은 미래까지 구급하는 곳”, 인권하루소식 강성준, 2003.9.23.
- 청송 감호소 또 단식농성,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경향신문 최슬기 기자, 2003.10.1.
- 왜냐면 토론/나는 절망의 땅으로 내쫓겼다, 한겨레 조석영, 2003.10.2.
- 청송보호 감호소 단식농성 수용자 숨져, SBS 신승이 기자, 2003.10.4.
- ‘사회보호법 폐지’ 또 논란, 머니투데이, 2003.10.6.
- 독자기자식/보호감호자 가출소 확대 취업알선 등 대책도 함께 외, 한겨레 천원기,

- 2003.10.6.
-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단식농성 직후에 사망, 한국일보 박진석 기자, 2003.10.6.
-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인권하루소식 김정아, 2003.10.7.
- 청송감호소 수용자 사망원인은 복막염, 서울신문 김상화 기자, 2003.10.7.
- ‘보호감호’ 개선보다 폐지가 좋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소식 문만식, 2003.10.7.
- 여론마당/사회보호법 인권유린 우려, 문화일보 이정하, 2003.10.11.
- [금요칼럼] ‘보호감호제’ 존폐 딜레마, 동아일보 정성진, 2003.10.17.
- 편집자에게/보호감호 연재기사 소중해 사회보호법 폐지 힘써주길, 한겨레 정기영(가명), 2003.10.20.
-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키로, 세계일보 2003.12.1.
- 청송감호소 20년만에 문닫나?...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1일 국회 제출, 국민일보 태원준 기자, 2003.12.1.
-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3.12.6.
- [갈곳없는 보호감호 출소자]①거리 떠도는 수백명의 가출소자..절반이 再犯, 세계일보 황현택-김창덕 기자, 2003.12.9.
- 보호-치료감호제 폐지-개선 가닥, 세계일보 황현택-김창덕 기자, 2003.12.10.
- [갈곳없는 보호감호 출소자]②7~11월 가출소자 추적, 세계일보 황현택-김창덕 기자, 2003.12.10.
- [갈곳없는 보호감호 출소자]③부실한 사회재정착 시스템, 세계일보 황현택-김창덕 기자, 2003.12.11.
- <특집> ‘2003 겨울터널’ 을 지나는 사람들①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인권하루소식 배경내, 2003.12.18.
- 보호감호제 연내 폐지될듯, 서울신문 박정경 기자, 2003.12.22.
-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쫓아가나, 인권하루소식 임국현, 2003.12.23.
-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인권하루소식 임국현, 2004.1.13.
- 사회보호법 폐지 건의..인권위 전원위원회 “이중처벌로 인권침해”, 세계일보 김창덕 기자, 2004.1.13.
- 정부 사회보호법 폐지 추진, 매일경제 이창훈 기자, 2004.1.13.
- [사설] ‘이중처벌’ 사회보호법 폐지 마땅하다, 한겨레, 2004.1.14.
- 사회보호법 폐지 추진/청와대 “이르면 16대 국회서 처리”, 한겨레 백기철-하석-황준범 기자, 2004.1.14.
- 보호감호제 폐지될듯..법무부 “언제든 검토 가능”, 세계일보 김창덕 기자, 2004.1.14.
- ‘치료’ 빠진 치료감호 ‘인권’ 만 휘둘린다, 국민일보 김나래 기자, 2004.1.14.
- [사설]사회보호법 더 끌고 갈 명분 없다, 세계일보, 2004.1.15.

- [사설]사회보호법 폐지 방향 옳다, 동아일보, 2004.1.15.
-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②사회보호법 폐지법, 인권하루소식 배경내, 2004.1.16.
-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인권하루소식 임국현, 2004.1.17.
- 왜냐면 토론/가출소 기준은 지켜지고 있는가, 한겨레 청송 제1감호소 154번 수용자, 2004.1.19.
- [토론평장]사회보호법 폐지외에 대안 없다, 법률신문 장유식, 2004.1.26.
- 보호감호제 존폐 전면 재검토, 내일신문 엄경용 기자, 2004.1.28.
-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인권하루소식 최은아, 2004.2.3.
-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4.2.5.
-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인권하루소식, 2004.2.7.
-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인권하루소식 고근예, 2004.2.27.
- <기고>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인권하루소식 조석영, 2004.3.17.
- 피보호감호자 재범률 21%로 급증, 매일경제 민석기 기자, 2004.3.24.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4.5.4.
- 조폭두목 김태춘씨 보호감호 재심청구, 서울경제, 2004.5.9.
- 청송감호소 수용자 자살,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4.5.14.
-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4.5.19.
-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안팎-수형자 인권 대폭 개선, 경향신문 손제민 기자, 2004.5.19.
-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권고, 법무부 정책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경향신문 최희진 기자, 2004.5.19.
-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추진, 한겨레 안창현 기자, 2004.5.19.
- 보호감호대상 대폭 축소키로, 동아일보 이상록 기자, 2004.5.19.
- [사설]사회보호법 폐지 서둘러야, 한겨레, 2004.5.20.
- [사설]보호감호, 실제 내용이 문제다, 한국일보, 2004.5.20.
- [정치]당정, 사회보호법 폐지키로, KBS 박전식 기자, 2004.5.21.
- "사회보호법 폐지", MBN뉴스 함영구 기자, 2004.5.21.
- <시론> 사회보호법 폐지후가 중요, 경향신문 유시춘, 2004.5.22.
- 보호감호제 연내 폐지키로, 서울신문 구해영 기자, 2004.5.22.
- 기고/보호감호, 이중처벌 아니다, 한국일보 정동기, 2004.5.24.
- "보안법 등 반인권법안 조속 개폐해야" /인권단체, 강금실법무 면담, 한겨레 김동훈 기자, 2004.7.14.
- 김승규 법무, "중수부 폐지 반대", 한겨레 김동훈 기자, 2004.8.10.

- [사설] 金 법무장관 발언 경청을, 국민일보, 2004.8.11.
- 보호감호 가출소자 재범률 급증,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4.8.12.
- 청송감호소 '퇴출' 될듯...여당, 사회보호법 폐지→치료보호법 대체 추진, 2004.8.17.
- 노회찬, 사회보호법 폐지 추진, 레이더투데이, 2004.8.27.
- 당정, 사회보호법 폐지 원칙 합의, 매일경제 박정철 기자, 2004.9.6.
-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인권하루소식 박석진, 2004.9.10.
- 與 사회보호법 폐지 수혜자는 조폭두목?, 세계일보 김귀수 기자, 2004.9.11.
- 여당이 '주먹代父' 풀어준다? 사회보호법 폐지 추진 김태춘씨 출소 가능성, 경향신문 김준기 기자, 2004.9.11.
- 법무부 "보호감호 완전폐지 반대" /강력사범은 존치 필요,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2004.9.20.
- 보호감호제 폐지 당-정 마찰...우리당 폐지추진에 법무부 축소 주장, 국민일보 지호일 기자, 2004.9.20.
- 강력범죄 '삼진아웃' 추진-성폭행.강도등 3회이상 범행땀 가중처벌,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 2004.10.2.
- 보호감호제 없앤다... "약물중독자등 격리 치료보호법 제정", 한겨레 김의겸 기자, 2004.11.1.
-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4.11.2.
- [세상읽기] 사회보호법, '무능력자'를 향한 제도적 폭력, 월간노동사회 2004년 12월호(통권제94호), 2004.12.
-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200여명 무기 단식농성, 오마이뉴스 김덕진, 2005.1.11.
-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2005.1.12.
- 청송감호소 재소자 5일째 단식... '사회보호법' 폐지 주장 30여명 탈진, 국민일보 김재산 기자, 2005.1.15.
- 청송 재소자들 5일째 단식 가출소 기준 형평성 요구, 경향신문 최슬기 기자, 2005.1.15.
- 사회보호법 폐지해도 상습강력범은 계속 보호관찰, 세계일보 2005.1.25.
- '청송감호소 단식' 한겨레 기사/마산교도소 삭제 인권위 조사, 한겨레 황상철 기자, 2005.1.31.
- 당정, 보호감호제 폐지 추진, 부산일보 박소윤 기자, 2005.2.16.
- 보호감호제 폐지 의미.전망-인권침해, 이중처벌 논란 중지부, 경향신문 권재현 기자, 2005.2.17.
- [사설] 보호감호 폐지는 마땅하다, 한겨레, 2005.2.17.
- "보호감호 없애주세요" 청송서 본사에 무더기 편지, 한겨레 김동훈 기자, 2005.2.17.
- [설왕설래]청송감호소, 세계일보 정동길 논설위원, 2005.2.18.

-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2005.2.19.
- 김태춘씨 보호감호 재심청구 기각, 한겨레 김영환 기자, 2005.3.26.
- [논평]사회보호법이러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인권하루소식, 2005.6.18.
- [해설]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인권하루소식 강성준, 2005.6.22.
- '사회보호법' 폐지안 처리, 국회 법사위소위 통과 청송감호소 폐쇄키로, 경향신문 최재영 기자, 2005.6.29.
- 청송감호소 사라진다, MBC 최장원, 2005.6.29.
-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인권하루소식 고근예, 2005.6.30.
- 뉴스브리핑/사회보호법 폐지 앞두고 김태춘씨 어제 석방, 문화일보 노운정 기자, 2005.7.1.
- 김태춘 풀려났다, 세계일보 김태훈강구열 기자, 2005.7.1.
- "출소자들 바른 삶 살게 돕겠습니다", 세계일보 신진호 기자, 2005.7.4.
- 서울중앙지검 '사보법폐지 강력범처벌 강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5.7.17.
- "사회보호법 말뿐인 폐지" 경과규정에 반발, 서울신문 김효섭 기자, 2005.7.18.
- '보호감호 2년이상' 전원 가출소 혜택, 서울신문 김효섭 기자, 2005.7.20.
- 사회보호법 폐지로 현판내리는 '인권침해' -청송감호소 역사속으로, 경향신문 백승목.선근형 기자, 2005.8.3.
- 청송감호소, 22년만에 '옛이야기' 로, 한겨레 황예량 기자, 2005.8.3.
- [시론] 인권, 청송감호소를 나오다, 동아일보 이호중, 2005.8.4.
- [한국시론] 사회보호법은 없어졌지만..., 한국일보 장유식, 2005.8.8.
- 17년만에 자유인된 김태춘씨...고법, 보호감호 청구 기각, 경향신문 이인숙 기자, 2005.8.11.
- 보호관찰대상 1200명 '잠적', 서울신문 박경호 기자, 2006.5.23.
- 탈주범 이낙성 1년7개월만에 검거, 한겨레 전진식 김기태 기자, 2006.11.1.
- 딱한 이낙성? "초라한 외모...사회보호법의 희생양" 동정, 한국일보 고찬유강철원 기자, 2006.11.2.
- "교도소 배포 매체 일부 삭제, 위법 아니다", 매일신문 최창희 기자, 2006.12.23.

### 사회보호법 폐지 활동백서 제2권 - 활동자료(1)

■발행일 : 2008년 10월 6일

■펴낸곳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